

한국표준산업분류

(광제조업 제정)

1963. 0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제1장 산업분류의 일반원칙	1
1. 산업분류의 성질	1
2. 산업분류의 기본원칙	2
3. 산업분류적용의 단위	2
4. 사업체의 정의	4
5. 사업체의 산업분류	5
6. 부수된 사업체의 취급	6
제2장 산업분류번호의 10진분류법	7
제3장 광업 및 제조업분류일람표	10
제4장 광업 및 제조업분류의 내용설명	20
1 광업(대분류)	20
11 석탄광업	20
12 금속광업	21
13 희유금속광업	22
14 토사석채굴업	22
15 염업	23
19 비금속광업	23
2-3 제조업(대분류)	25
20 식료품제조업	26
21 음료품제조업	31
22 연초제조업	32
23 섬유제조업	33
24 화류 의복류 및 장신품제조업	40
25 제재 및 목제품제조업	44
26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47
27 지류 및 지류제품제조업	48
28 인쇄출판 및 동 유사업	51
29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	54
30 고무제품제조업	55
31 화학 및 화학제품제조업	57
32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64

33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65
34 제1차금속제조업	71
35 금속제품제조업	75
36 기계제조업	80
3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85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88
39 기타제조업	92

광공업센서스를 위한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광업및제조업편)는 1963년3월12일자 경제기획원고시 제10호로 제정공표되었으며 1963년3월1일부터 시행케 된 것으로서 동분류는 통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1년6월부터 1962년7월까지 1년동안 경제기획원주관하에 설치된 표준산업분류심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광업 및 제조업분류는 경제기획원과 한국산업은행을 조사 실시기관으로 하는 1963년광공업센서스를 위하여 이미 제정된 표준분류를 토대로 하여 센서스준비심의회분류반이 다시 편집한 것으로서 이편집에 있어서는 내용설명에서 약간의 가필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업종의 예시를 추록함으로서 실지사용의 편리를 도모한 것이다. <편집자주>

제1장 산업분류의 일반원칙

1. 산업분류의 성질

산업분류는 경제활동의 성질에 따르는 산업별 분류이며 직업별 또는 상품별 분류가 아니다. 여기에서 산업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체에서 그의 사업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업분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분류이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분류 또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분류와는 상이한 것이다.

2. 산업분류의 기본원칙

이 분류는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산업구조를 고려하고 국제비교상 UN기준과 다음 제점에 의하여 산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1) 생산품 또는 제공용역의 종류

(2) 사업체의 기술적구조 원재료의 성질

(3) 사업체수 종업원수 작업량 고용 및 임금변동 기타 중요경제사상

이 분류는 경제활동의 성질에 따른 산업별분류이기 때문에 소유형태여하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류에서는 국영이든 민영이든 소유자 여하에 관계없이 동성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동일업종으로 분류한다.

3. 산업분류적용의 단위

산업분류적용의 단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체(Enterprise) 사업체(Establishment) 기술적단위(Technical Unit) 작업단위(Operational Unit) 등이다. 기업체는 영리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단위는 수익 또는 자본투자등의 재무통계를 분류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는 각기 이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수개의 공장, 광산, 상점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 기업체 전체를 단일업종으로 분류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따라서 산업분류 적용의 단위로서 기업체를 사용한다면 산업분류에 있어서 별개로 분류되어야 할 각종경제활동이 단일업종으로 분류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체의 개념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점포, 광산, 농장, 병원, 사업소와 같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일정한 물리적장소를 말한다.

이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기업체와 같을 것이나 특히 수종의 경제활동이 단일 기업체에 의하여 경영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그 기업체를 수개의 사업체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체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 단위 즉 사업체는 보통 공업센서스 또는 상업센서스에서 조사하여야 할 모든 항목인 종업원수 임금 및 봉급 지급액 생산비 또는 출하액등의 기본적자료를 제공하여줄 수 있는 최소단위인 것이다.

술적단위라 함은 특정생산물 또는 용역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작업을 일 단으로 본 것을 말한다. 주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부수적 활동은 기술적 단위로 볼수 없다.

그런데 기술적단위에 의하면 한 사업체가 별개로 분류되는 2종이상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2종 이상의 기술적 단위로 분할할 수 있으나 사무 및 기타종업원, 원재료, 연료비중의 어떤 것 또는 기타 경상비를 분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작업단위라 함은 작업의 성질에 의한 개념이며 비록 사업체의 부수적 활동이라도 작업 단위로 본다. 따라서 이 단위에 의하면 공장의 발전실은 전기업에 분류되는 반면에 자동차 차고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단위에 의하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가 곤란하다는 것과 더욱이 부수적 작업의 성패는 주된 경제활동의 성패에 의존하는 것이며 그 작업이 분류된 산업의 조건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분류 적용의 단위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체이다. 그러나 이윤 또는 자본투자와 같은 특수사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기업체와 같은 기타의 단위를 사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4. 사업체의 정의

이 항목에서는 실제적 지침을 삼기 위하여 사업체의 개념을 보다 더 상세히 정의하기로 한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무소, 점포등과 같이 그곳에서 작업 또는 써어비스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즉 구역을 설정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에 있으면 경영주체가 동일한 한 1구역으로 보고 한 단위로 취급한다. 동일구내에 경영체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우에 몇개의 사업체가 있는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임금대장과 재산목록을 각각 별개로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마다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임금대장과 재산목록이 동일한 한 1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혼존부기제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소규모사업체가 많으므로 이 설정을 참작하여 임금대장이 없더라도 임금지불장소가 일정하다든가 종업원이 전문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을 때에는 임금대장이 있다고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정식재산목록이 없더라도 원료구입액, 원료소비액, 생산액, 생산품의 판매액을 알 수 있어서 통계조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재산목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가족만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경영비와 가계비의 구별만 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5. 사업체의 산업분류

위에서는 산업분류 적용의 단위와 사업체의 정의를 말하였으므로 다음 문제는 한 사업체에 대한 산업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단일사업체내에서 이질적인 경제활동을 결합하여 영위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주된 경제활동에 의해서 결정한다. 즉 과거 1개년간의 총수입이 최고이었던 한 생산품 (또는 집단), 써어비스사업에 의하여 결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수입은 우연 또는 행운에 의한것을 제외한 정상적인 것만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원칙에 의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기준일에 영위되고 있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1개년간의 총수입에 의해서 주된 사업을 결정한다.

휴업중 또는 청산중인 사업체에 대한 산업분류는 영업중 또는 청산개시전의 사업종류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 설립중에 있는 사업체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종류에 따라 산업분류를 정한다.

관리사무를 맡고있는 본사, 지사, 출장소등은 그가 관리하는 주된 사업체와 동일사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매를 주로하는 출장소등은 도매업(상업)으로 분류한다.

한 사업체의 활동이 두개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고 또 그것이 별목업과 제재업, 점토채굴업과 벽돌제조업과 같이 둘이상의 사업종류가 결합되어 있어서 거의 명백한 분리가 곤란할 때에는 최종목적인 제재업과 벽돌제조업을 주된 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히 일부원목만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별목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한다.

6. 부수된 사업체의 취급

한 사업체의 경제활동이 주된 사업체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업체의 업종은 주된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한다.

예컨대 제조공장에 부속된 빌전소, 수리공장, 차고, 창고등이 임금대장과 재산목록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도 주된 공장에 부수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체로 볼수는 있으나 그 업종은 주된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으로 분류한다.

제2장 산업분류번호의 10진분류법

1. 산업분류번호에 있어서는 10진분류법을 채용하였다.

10진분류법은 일련번호를 붙이는 방법보다 신업종의 설정 또는 기존업종의 병합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수자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접계에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다.

2. 이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4계단의 분류이며 분류번호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10진분류법을 사용하였다.

(1) 경제활동의 전부문을 10개의 「대분류」로 분할하고 각기에 0부터 9까지의 수자를 할당한다. 그러므로 분류번호의 제1위 수자는 대분류의 번호를 의미한다.

(2) 각 대분류를 9개 이하의 「중분류」로 다시 분할하고 1부터 9까지의 수자를 할당한다.(제조업은 예외) 그러므로 제1위 수자와 제2위 수자가 합쳐서 제1위 수자가 표시하는 대분류산업내의 제2위 수자가 표시하는 중분류산업을 의미한다.

(3) 중분류는 또다시 9개 이하의 「소분류」로 분할되고 1부터 9까지의 수자가 각기에 할당되므로 제1위 제2위 제3위 수자가 합쳐서 어떤 대분류의 어떤 중분류의 어떤 소분류를 의미하게 된다.

(4) 소분류는 또다시 9개 이하의 「세분류」로 분할되며 1부터 9까지의 수자가 각기에 할당된다. 그러므로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의 수자가 합쳐서 어떤 대·중·소분류에 속하는 세분류산업을 표시하는 번호가 된다.

(5) 어느 분류가 다시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어느 소분류가 둘 이상의 세분류로 재분할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소분류의 명칭을 그대로 세분류의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그 세분류의 분류번호는 소분류의 분류번호에 0자를 더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중분류를 소분류로 소분류를 세분류로 분할하여 수자를 할당할 때에 0자를 사용치 아니한다.

이것은 실제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할 때 보고불충분으로 인하여 가령 어느 사업체가 「중분류 23섬유제조업」에 속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 중분류의 어느 소분류 또는 세분류에 속하는 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그 사업체를 230 또는 2310으로 하여 집계를 진행시키고 차후에 조사확인하여 각기정당분류에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자를 예비해두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6) (5)의 0자는 이 이상 더 세분하지 않는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자의 한 예이나 이밖에 9자가 일반적으로 「기타」를 의미하는 특수한 수자이다.

즉 어느 분류업종을 세분함에 있어서 수개의 분류업종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일괄하여 「기타」 또는 「상계이외」라고 하면 충분한 경우 최후의 「기타」 분류업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9의 수자를 사용한다.

이와같이 하면 필요에 응해서 「기타」 분류업종중에서 용이하게 일부를 끄집어 내어 독립업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의 분류업종으로 빠짐없이 분류할 수 있는 때에도 9의 수자를 사용할 때가 있으므로 9의 수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 1. 전산업에 대한 대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어업; 1 광업; 2-3 제조업; 4 건설업; 5 전기, 개스, 수도 및 위생사업; 6 상업, 금융 및 부동산업 7 운수, 보관 및 통신업; 8 써어비스업; 9 분류할 수 없는 것

2. 제조업에 있어서 2-3의 대분류번호를 할당한 것은 제조업의 중분류업종이 20개로서 이를 10진법에 의하여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장 광업 및 제조업 분류일람표

1	광업
11	석탄광업
111	무연탄광업
1110	무연탄광업
112	갈탄광업
1120	갈탄광업
12	금속광업
121	철광업(사철 채굴업포함)
1210	철광업(사철 채굴업포함)
122	기타금속광업(철광업 제외)
1221	중석광업
1222	망강광업
1223	금은광업(사금포함)
1224	동광업
1225	연광업
1226	아연광업
129	상게이외의기타금속광업
1290	상게이외의기타금속광업
13	회유금속광업
130	회유금속광업
1300	회유금속광업
14	토사석채굴업
140	토사석채굴업
1400	토사석채굴업
15	염업
150	염업
1500	염업
19	비금속광업(석탄및토사석채굴업 제외)
191	흑연광업
1910	흑연광업
192	고령토광업
1920	고령토광업
193	활석광업
1930	활석광업
194	형석광업
1940	형석광업

199	상계이외의비금속광업
1990	상계이외의비금속광업
2~3	제조업
20	식료품제조업(음료품제외)
201	도살,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2010	도살,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202	과실, 야채, 어류기타해산물통조림 및 저림업
2021	과실, 야채류의통조림 및 저림업
2022	어류 및 해산식료품의 통조림및저림업
203	도정 및 제분업
2031	도정업
2032	제분업
204	빵 및 과자류제조업
2041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愧성있는빵류제조업
2042	「비스ケット」 및 기타건빵류제조업
205	제당 및 정당업
2050	제당 및 정당업
206	「코코아」「죠코렐」 및 사탕과자제조업
2060	「코코아」「죠코렐」 및 사탕과자제조업
207	간장, 된장 및 조미료제조업
2071	간장 및 된장제조업
2079	「쏘스」, 식초, 미소및기타조미료제조업(소금 제외)
208	인조빙제조업
2080	인조빙제조업
209	기타식료품제조업
2091	국수제조업(메가로니포함)
2092	전분제조업
2093	두부제조업
2094	콩나물제조업
2099	상계이외의식료품제조업
21	식료품제조업
211	종류주 및 혼합주제조업
2110	종류주및혼합주제조업
212	맥주제조업
2120	맥주제조업
213	약주 및 탁주제조업
2130	약주 및 탁주제조업
214	청주제조업

2140	청주제조업
215	국자제조업
2150	국자제조업
216	청량음료품제조업
2160	청량음료품제조업
22	연초제조업
220	연초제조업
2200	연초제조업
23	섬유제조업(의복, 기타섬유제품제외)
231	방적업
2311	면방적업
2312	생사제조업
2313	모방적업
2314	마 및 기타방적업
2315	연사 및 실제조업
232	직물제조업
2321	면직물제조업
2322	견, 인견 및 화학섬유직물제조업
2323	모직물제조업
2324	마저 및 기타직물제조업
2325	세폭직물제조업
233	표백 및 염색가공업
2330	표백 및 염색가공업
234	편직물
2341	양말제조업
2342	「메리야스」제내의편조업
2343	장갑편조업
2344	「메리야스」제외의제조업
2349	기타편직물
235	망 및 망제조업(고공품제외)
2351	「로오프」제조업
2352	어망제조업
239	상게이외의직물제조업
2391	초제자리제품제조업(고공품제외)
2392	고공품제조업
2399	상게이외의직물제품제조업
24	화류, 의복류 및 장신품제조업
241	화류제조업(고무신류제외)

2411	혁제화류제조업
2419	상게이외의화류제조업
242	화류수선업
2420	화류수선업
243	의복류제조업
2431	남자용외의제조업
2432	여자용외의제조업
2433	소아용외의제조업
2434	내의제조업
2435	장갑제조업
2436	우의및기타방수용외의제조업
2437	모자류제조업
2439	기타장신품제조업
24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490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5	제재및목제품제조업(가구류제외)
251	제재업
2510	제재업
252	합판및베니야단판제조업
2520	합판및베니야단판제조업
253	목상자및목통류제조업
2530	목상자및목통류제조업
254	죽재,등및「콜크」제품제조업
2540	죽재,등및「콜크」제품제조업
259	기타목제품제조업
2590	기타목제품제조업
26	가구및장치품제조업
261	가정용및사무용가구제조업
2610	가정용및사무용가구제조업
269	기타가구및장치품제조업
2691	건구제조업
2692	사무실및점포용장치품제조업
2699	기타가구및장치품제조업
27	지류및지류제품제조업
271	「팔프」및지류제조업
2711	「팔프」제조업
2712	신문용지제조업
2713	모조지및편면용지제조업

2714	「크리프트」 지제조업
2715	기타양지류 및 선화지제조업
2716	카아드판지제조업
2717	한지제조업(선화지제외)
2718	건축용지 및 판지제조업
272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일관작업제품은 제외)
2721	가공지제조업
2722	지대 및 봉투제조업
2723	지제상자 및 지제용기제조업
2729	기타지류 및 판지품제조업
28	인쇄, 출판및 동 유사업
281	신문발행업
2810	신문발행업
282	서적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2820	서적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283	기타인쇄물출판업
2830	기타인쇄물출판업
284	상업적인 쇄업
2840	상업적인 쇄업
285	「노오트」 장부및 유사품제조업
2850	「노오트」 장부및 유사품제조업
286	식자업 및 인쇄용원판제조업
2860	식자업 및 인쇄용원판제조업
287	제본업 및 유사업
2870	제본업 및 유사업
29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화류 및 의복류제외)
291	제혁업
2910	제혁업
292	피혁제품제조업(화류 및 의복류제외)
2921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
2922	포류제조업
2929	기타피혁제품제조업
30	고무제품제조업
301	고무「타이어」 및 「튜부」제조업
3010	고무「타이어」 및 「튜부」제조업
302	고무제화류 및 부속품제조업
3020	고무제화류 및 부속품제조업
303	재생고무제조업

3030	재생고무제조업
304	「타이어」 재생업
3040	「타이어」 재생업
305	공업용고무제품제조업
3051	고무벨트제조업
3059	기타공업용고무제품제조업
309	기타고무제품제조업
3090	기타고무제품제조업
31	화학 및 화학제품제조업
311	비료제조업
3111	요소비료제조업
3112	류산암모이나제조업
3113	인산질비료제조업
3119	기타화학비료제조업
312	공업용기본화학제품제조업
3121	「알카리」제품제조업
3122	전로제품제조업
3123	공업용「깨스」제조업
3124	산업용폭발물 및 화화제조업
3125	화학섬유제조업
3126	무기 및 유기안료제조업
3129	기타공업용기본화학제품제조업
313	동식물유지제조업
3131	식물유지제조업
3132	동물유지제조업
314	의약품제조업
3140	의약품제조업
315	비누제조업
3150	비누제조업
316	도료제조업
3160	도료제조업
317	성냥제조업
3170	성냥제조업
31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3191	인쇄용「잉크」제조업
3192	향료및화장품제조업
3193	농약제조업
319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32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21	석유정제업
3210	석유정제업
322	연탄제조업
3221	「마세크」제조업
3222	공탄제조업
329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290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3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331	구축용점토제품제조업
3311	벽돌제조업(콘크리트제품제외)
3312	기와제조업
3313	「타일」제조업
3314	내화품제조업
3319	기타구축용점토제품제조업
33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321	판유리
332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판유리제외)
3323	유리제품가공업
333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
3331	부엌 및 탁상용도자기제조업(토기제외)
3332	전기용도자기제조업
3333	토기제조업
3339	기타도자기제조업
334	「씨멘트」제조업
3340	「씨멘트」제조업
335	「콘크리트」제품제조업
3350	「콘크리트」제품제조업
3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391	석회제조업
3392	석재및석공품제조업(연마재료제외)
3393	연마재료제조업
3399	상게이외의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4	제1차금속제조업
341	제1차철강제조업
3411	제철 및 제강업
3412	철강압연업
3413	철강주물제조업

3414	철강신선업
3419	기타제1차철강제품제조업
342	제1차비철금속제조업
3421	동제련 및 정련업
3422	동이외의 비철금속제련 및 정련업
3423	비철금속압연선선업
3424	알미늄주물제조업
3425	비철금속주물제조업(알미늄주조제외)
3429	기타제1차비금속제품제조업
35	금속제품제조업(기계및수송용기계기구제외)
351	양철관및기타철관제품제조업
3510	양철관 및 기타철관제품제조업
352	인물, 수공구및일반철물제조업
3521	인물및식탁용품제조업
3522	수공구제조업(농기구제외)
3522	수공구제조업(농기구제외)
3523	농기구제조업
3529	기타철물류제조업
353	위생장치,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전기식제외)
3530	위생장치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전기식제외)
354	구축용금속제품제조업
3540	구축용금속제품제조업
355	법랑철기및「프레쓰」가공금속제품제조업
3551	「프레쓰」가공제품 및 부엌탁상용알미늄제품제조업
3552	법랑철기및「프레쓰」가공금속제품제조업(알미늄제품제외)
356	선재제품제조업
3561	철정제조업
3569	기타선재제품제조업
357	「낫트」「볼트」「와셔」「리벳트」「나사」류제조업
3570	「낫트」「볼트」「와셔」「리벳트」「나사」류제조업
358	도금업
3580	도금업
359	기타금속제품제조업
3590	기타금속제품제조업
36	기계제조업(전기기계제외)
361	원동기제조업
3610	원동기제조업
362	농업용기계제조업(농기구제외)

3620	농업용기계제조업(농기구제외)
363	건설 및 광산용기계 및 설비제조업
3630	건설 및 광산용기계 및 설비제조업
364	금속공작기계제조업
3640	금속공작기계제조업
365	섬유기계제조업
3650	섬유기계제조업
366	기타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3661	식료품제조용기계제조업
3669	기타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367	일반산업용기계및장치품제조업
3670	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
368	사무용, 씨어비스용, 가정용, 기계기구제조업
3680	사무용, 씨어비스용, 가정용, 기계기구제조업
369	기타기계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3690	기타기계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3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71	전기기계 및 공업용전기기기구제조업(통신용전기기기제외)
3710	전기기계 및 공업용전기기구제조업(통신용전기기기제외)
372	전동기 및 기타산업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3720	전동기 및 기타산업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373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
3730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
374	절연전선 및 케이블제조업
3740	절연전선 및 케이블제조업
375	전구제조업
3750	전구제조업
376	통신기계기구 및 유사품제조업
3760	통신기계기구 및 유사품제조업
377	전지제조업
3771	축전지제조업
3772	건전지제조업
379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3790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81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11	선박용기관제조 및 수리업
3812	강철제선박건조 및 수리업

3813	목조선박건조 및 수리업
382	철도차량제조업
3820	철도차량제조업
383	자동차제조업
3831	완성차 및 자동차「샤시」제조업
3832	각종자동차의차체 및 「트레이러」제조업
3833	자동차부분품 및 부속품제조업
384	자동차수리업
3840	자동차수리업
385	자전차「모터싸이클」 및 동부속품제조업
3851	자전차「모터싸이클」 및 동부속품제조업
3852	자전차수리업
389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890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9	기타제조업
391	의료, 과학 및 계측조정용기계기구제조업
3911	과학 및 계측조정용기계기구제조업(의료용제외)
3912	의료용기계기구제조업
392	사진기 및 광학기계기구제조업
3921	광학기계기구 및 렌즈제조업
3922	안경제조업(테줄포함)
393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
3930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
394	「프라스틱」제품제조업
3940	「프라스틱」제품제조업
395	칠기제조업
3950	칠기제조업
396	펜, 연필, 기타사무용품 및 화가용품제조업(지류제외)
3960	펜, 연필, 기타사무용품 및 화가용품제조업(지류제외)
399	상계이외의제조업
3991	우산 및 양산제조업
3992	돈모가공업
3993	완구 및 운동용구제조업
3999	상계이외의제조업

제4장 광업 및 제조업분류의 내용설명

대분류 1 광업

광업(대분류 1)은 유기물 혹은 무기물임을 불문하고 천연적으로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채광이나 채취는 지하갱도서 하든 지표갱장에서 하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또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부수적작업 즉 광석의 파쇄, 세척, 건조 및 선광등도 채광경영자가 하든 타인이 청부에 의하여 하든 이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광업 활동에 포함한다. 광물시굴도 광업활동에 포함한다.

단 광석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제련업은 제조업(대분류 2~3)으로 분류한다. 채취한 암석을 일정한 크기로 끊는 작업을 하는 사업과 비석, 묘석을 조각하고 다듬어서 산매하는 사업은 제조업(대분류 2~3)으로 분류하나 오직 채석 현장에서 전기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광업으로 분류한다.

11 석탄광업

무연탄 및 갈탄등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석탄을 원료로 하여 연탄 및 「마세크」탄을 제조하는 것은 연탄제조업(322)으로 분류하고 석탄광업에서 제외 한다.

111 무연탄광업

1110 무연탄광업

무연탄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연탄의 파쇄, 세척, 선광등의 작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무연탄

× 연탄(3222) 마세크탄(3221)

112 갈탄광업

1120 갈탄광업

갈탄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갈탄

× 토탄(1990)

12 금속광업

금속광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하며 금속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부수사업과 품위향상을 위한 작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여러가지 종류의 금속광석등을 채굴하는 사업은 그중 주된 광산물에 의하여 분류 한다. 제련업과 정련업은 제1차금속제조업(34)으로 분류한다.

- 121 철광업(사철채굴업포함)
1210 철광업(사철채굴업포함)
 철광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광석중의 혼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부수적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제철업은 제철 및 제강업(3411)으로 분류한다.
 ○ 철광석
- 122 기타금속광업(철광업제외)
1221 중석광업
1222 「망강」광업
1223 금은광업(석금포함)……제련업은 3422
1224 동광업………동제련업은 3421
1225 연광업
1226 아연광업
129 상케이외의 기타금속광업
1290 상케이외의 기타금속광업
 「닉켈」, 창연광석, 유화철광, 「크롬」, 「안치몬」, 「모리부테늄」(수연광석), 주석, 수은, 「코발트」, 「티타늄」, 「황철도」등 상케이외의 금속광업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 13 희유금속광업
 희유금속광업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 130 희유금속광업
1300 희유금속광업
 ○세리움광업 ; 도리움광업 ; 라디움광업 ; 질코니움광업 ; 벨리움광업 ; 우라늄광업 ; 탄탈륨 ; 니오비움광업
- 14 토사석채굴업
 점토, 사, 자갈, 석재, 화강암, 대리석, 석회암, 사암, 점판암등의 토건용 토사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령토와 같이 토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사석류는 석탄 및 토사석 이외의 비금속광업(19)에 분류한다.
- 140 토사석채굴업
1400 토사석채굴업

15	염업	해수를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염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150	염업	
1500	염업	
19	비금속광업(석탄 및 토사석 채굴업 제외)	석탄 및 토사석을 제외한 비금속광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191	흑연광업	
1910	흑연광업	
192	고령토광업	
1920	고령토광업	
193	활석광업	
1930	활석광업	
194	형석광업	
1940	형석광업	
199	상계이외의 비금속광업	
1990	상계이외의 비금속광업	석면, 석고, 중정석, 운모, 토탄(니탄)등 각종 상계이외의 비금속광업이 여기에 분류된다.
	○ 석면광업 ; 납석광업 ; 채석 ; 중정석광업 ; 운모광업 ; 마구네사이트광업 ; 유황광업 ; 석고광업 ; 규사석채굴업 ; 가오린광업 ; 인광업	
대분류 2~3	제조업	유기 또는 무기의 물질에 물리적, 화학적작용을 가함으로서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제조업이라고 한다. 그 작업은 동력으로 하든 인력으로 하든 또는 공장에서 하든 가내에서 하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제조된 부분품을 조성(조립)하는 활동은 건물, 도로, 항만등의 건설 또는 시설공사만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제조업으로 본다. 또한 기계기구, 차량, 선박등의 수리업은 수리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각업종으로 분류한다.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를 가공처리하여 줌으로서 가공임을 받는 임가공업도 제조업으로 본다.

신문사, 출판사는 자기가 인쇄하지 않더라도 발행출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 출장소등과 같이 주로 「뉴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서 제외된다.

농가, 어가에서 제조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자가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장 또는 작업장이라 볼 수 있고 그 제조활동에 상용노무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스스로 제조를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정부공장등에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도매(객주)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조업사업체의 지점, 출장소등 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체는 그가 소속하는 제조업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으로 분류한다.

소매를 겸하고 있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주로 주문에 의하여서만 소매하며 즉시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점업은 제조업에서 제외된다.

20 식료품제조업(음료품제외)

각종의 식료품 및 조미료와 같은 생产业 또는 유기질비료, 금수류용 조제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염업은 중분류 15에 분류한다.

201 도살,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2010 도살,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도살장, 육류포장, 육류통조림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수료를 받고 도살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빙과를 제외한 유제품제조업(살균업포함)도 여기에 분류한다.

○ 도살업 ; 냉동육제조 ; 고기건조업 ; 육류조제업 ; 고기통조림제조 ; 쏙세-지제조 ; 고기저림업 ; 분유및연유제조 ; 빼터제조 ; 치-스제조

✗ 마아가린(2099)

202 과실, 야채, 어류, 기타해산물통조림 및 저림업

과실, 야채, 어류, 기타해산물의 통조림 및 저림업등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과실, 야채류의 통조림 및 저림업

과실 및 야채류(과실, 야채 「쥬-스」의 원액도 포함)의 통조림(밀폐용기에의 포장)업과 저림업, 「쌈」, 「제리」제조업, 저림(지물)류의 통조림 제조업, 과실 및 야채의건조 및 냉동업을 말한다.

○ 과실 및 야채통조림업 ; 건조야채제조 ; 냉동야채제조 ; 과실제리제조 ; 과실저림업 ; 과실빼터제조 ; 과실시럽제조 ; 쥬우스원액제조

2022	<p>어류 및 해산식료품의 통조림 및 저림업</p> <p>어류와 기타식용해산물의 가공업을 말한다. 가공이라 함은 소금 저림, 건조, 밀폐 용기에의 포장, 냉동등의 작업을 말한다.</p> <p>한천제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공선에서의 어류통조림, 저림 및 가공업은 수산업 (04)에 분류하고 제조업에서 제외한다.</p> <p>○ 청해태제조 ; 해조통조림제조 ; 수산물가공업 ; 가미해태제조 ; 천이제조 ; 생선통조림제조 ; 해조가공업 ; 오징어건조업 ; 조개젓제조 ; 건어제조 ; 메루치건조업 ; 수산보존식료품제조 ; 새우젓제조 ; 미역건조업 ; 한천제조 ; 명란젓제조</p>
203	<p>도정 및 제분업</p> <p>미곡, 맥류 및 기타곡물의 도정업과 쌀, 밀, 두류, 기타곡물의 제분업을 말한다.</p> <p>농장이나 농가로부터(개인을 포함)의 청부도정 또는 청부제분을 하고 있는 사업체도 여기에 분류한다.</p> <p>농촌지방의 떡빵아간은 농촌부대「썩어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에서 제외한다.</p> <p>가축 및 가금용 조제사료제조업은 2099(상계이외의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p>
2031	<p>도정업</p> <p>쌀, 보리, 밀 및 기타곡류등의 도정업과 압쇄업을 말한다. 농가로부터의 청부도정을 주로 하는 도정업과 압쇄업도 여기에 포함된다.</p> <p>○ 정곡업 ; 정미업 ; 정맥업 ; 대맥압쇄업 ; 잡곡도정업</p>
2032	<p>제분업</p> <p>소맥, 대맥, 두류, 기타곡물을 제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가로부터의 청부제분을 주로 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된다.</p> <p>○ 제분업 ; 곡분제조 ; 소맥분제조 ; 메밀분제조 ; 고구마분제조 ; 두분제조 ; 감자분제조 ; 유아용곡분제조</p> <p>× 사료제조(2099) ; 패곡분제조(2099) ; 사료원료제조(2099) ; 패희제조(2099) ; 조미료의 제분업(2079)</p>
204	<p>빵 및 과자류제조업</p> <p>식빵, 「케이크」 및 이와 유사한 부폐성있는 빵, 「비스킷」, 건빵 및 건과자등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사탕과자제조업은 사탕과자제조업(2060)으로 분류한다.</p>
2041	<p>식빵 「케이크」 및 기타부폐성있는 빵류제조업</p> <p>○ 과자빵제조 ; 케이크제조 ; 전병제조 ; 양과자제조 ; 생과자제조 ; 카스테라제조 ; 떡제조</p> <p>× 수이제조(2099) ; 아이스크림제조(2099) ; 이과자제조(2060)</p>

2042	「비스켈」 및 기타건빵류제조업
	○ 건빵제조업 ; 비스켈제조업
205	제당 및 정당업
2050	제당 및 정당업
	원당을 제조하거나 원당을 정제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밀을 가공처리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사탕제조 ; 각사탕제조 ; 봉설탕제조 ; 사탕무제분업 ; 분말설탕제조 ; 당밀업 ; 정당업 ; 당밀가공처리업
	× 수이제조업(2099)
206	「코코아」, 「죠코렐」 및 사탕과자제조업
2060	「코코아」, 「죠코렐」 및 사탕과자제조업
	「코코아」, 「죠코렐」 및 모든 사탕과자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캬라멜제조업, 사탕바른과자제조업, 또는 「껌」 등의 제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칸디제조 ; 코코아제조 ; 정화과료제조 ; 죄코렐제조 ; 껌제조 ; 감초칸디제조 ; 코코아빼터제조 ; 도롭프스제조 ; 캬라멜제조 ; 이과자제조
	× 각사탕(2050)
207	간장, 된장 및 조미료제조업
2071	간장 및 된장 제조업
	○ 된장제조 ; 양조장(주로 간장, 된장을 제조하는 것) ; 분간장제조 ; 간장제조 ; 대용간장제조 ; 국된장제조 ; 고추장제조
2079	「쏘스」, 식초, 미소 및 기타조미료제조업(소금제외)
	○ 미미소제조 ; 식초제조 ; 조미료의 제분업 ; 카레이분제조 ; 구루다민산 소-다제조 ; 소-스제조 ; 식용아미노산제조
208	인조빙 제조업
2080	인조빙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아이스케이크」를 제외한 인조빙제조업을 말한다. 「아이스크림」 및 「아이스케이크」는 2099로 분류하고 여기서 제외한다.
	○ 인조빙 제조
	× 천연빙의 채취저장업
209	기타식료품제조업

2091	국수제조업(메카로니포함) 국수, 당면, 메밀국수류의 제조업을 말한다. ○ 메밀국수제조 ; 국수제조 ; 당면제조 ; 메카로니제조 ; 라면제조
2092	전분제조업
2093	두부제조업
2094	콩나물제조업
2099	상게이외의 식료품제조업 구입한 동식물유지를 가공하여 식용유, 「사라드오일」, 「마가링」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및 「베이킹파우다」, 유기질비료, 수금류용조제사료 등 상게이외의 식료품 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료제조 ; 해산비료제조 ; 골분비료제조 ; 어비제조 ;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크제조 ; 차제조 ; 옥수수시럽제조 ; 수이제조 ; 마아가린제조 ; 사라드오일제조 ; 식용포도당제조 ; 조미용유지제조 ; 이스트
21	음료품제조업 증류주, 맥주, 과실주, 청량음료 및 탄산「캐스」함유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음료품을 제조 또는 가공과정을 밟지 않고 단순히 담힐(기밀용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상업)으로 분류하고 여기서는 제외한다.
211	증류주 및 혼합주제조업
2110	증류주 및 혼합주제조업 음료용주정(각종 에젤알콜), 「위스키」, 「부란디」 등의 증류주, 과실주, 또는 혼합주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업용주정제조업은 기타공업용 기본화학제품제조업(3129)으로 분류한다. ○ 에젤알콜제조 ; 백알제조 ; 진제조 ; 위스키제조 ; 소주제조 ; 부란디제조 ; 혼합주제조 ; 알콜성음료제조 ; 보명주제조 ; 김미과실주제조 ; 삼펜주제조 × 공업용주정제조(3129)
212	맥주제조업
2120	맥주제조업 발효맥주와 합성맥주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발효맥주 ; 흑맥주제조 ; 생맥주제조
213	약주 및 탁주제조업
2130	약주 및 탁주제조업 약주 및 탁주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탁주제조 ; 약주제조 × 청주제조(2140)

- 214 청주제조업
2140 청주제조업
순곡주인 청주와 합성청주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15 국자제조업
2150 국자제조업
국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맥아제조 ; 중국제조 ; 국자제조
- 216 청량음료품 제조업
2160 청량음료품 제조업
「알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탄산수 「레몬쥬우스」 및 「소오다」 수 등과 같은 청량음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천연탄산수의 가공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청량음료품제조 ; 기호음료품제조 ; 사이다제조 ; 라무네제조 ; 탄산수제조 ; 쥬우스제조 ; 스페시콜라제조 ; 소오다수제조 ; 시닐코제조
× 당밀제조(2050) ; 쥬우스원액제조(2021)
- 22 연초제조업
각종연초의 제조, 엽연초의 처리, 예를 들면 엽연초의 등급을 붙인느 것, 재포장, 재건조, 경의 제거등의 처리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연초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살충제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공업(31)에 분류한다. 농가에서의 건조처리작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220 연초제조업
2200 연초제조업
○ 지권연초제조 ; 썹는담배제조 ; 봉지연초제조 ; 엽연초재건조장 ; 엽연초수납장 ; 엽연초처리업 ; 전매청연초공장 ; 엽권연초제조
- 23 섬유제조업(의복, 기타섬유제품제외)
방적을 목적으로하는 섬유의 처리업, 방적사, 연사, 직물, 편직물, 「레스」, 조뉴, 불담, 모포등의 제조업, 편직공장에서의 의복류제조, 방적사와 직물등의 염색 및 가공완성업, 유포, 「리노리움」, 인조피혁제조업, 직물의 도장 및 방수처리업, 「코네이지」, 「트와인」, 「로푸」, 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화학섬유인 「레온」, 「아셋레이드」, 「나이롱」, 「비니롱」, 「데트롱」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섬유제조업(3125)으로 분류한다. 또 석면, 암면등의 방적업은 유리 및 토석제품제조업(33)으로 분류한다.

- 231 방적업
방적을 목적으로 하는 섬유의 처리업, 면사, 생사, 모사등 방적용사의 제조업, 연사 및 실의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화학섬유의 방적업중 면방식으로 하는 것은 면방적업에 분류하고 모방식으로 하는 것은 모방적업에 분류한다.
- 2311 면방적업
면화 또는 원면으로부터 방적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화학섬유를 면방식으로 방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 면방적업 ; 면방식화학섬유방적업
- 2312 생사제조업
가잠 또는 야잠으로부터 생사, 옥사, 견방사, 야잠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잠사제조업과 부잠사를 원료로 한 견방사제조업 및 재조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생사제조 ; 옥사제조 ; 부잠사제조 ; 생사제조업 ; 견방적업
- 2313 모방적업
양모로부터 방적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화학섬유를 모방식으로 방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 소모방적업 ; 방모방적업 ; 수모방적업 ; 모방식화학섬유방적
- 2314 마 및 기타방적업
아마, 대마, 저마, 황마등의 마로부터 방적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315 연사 및 실제조업
연사업과 봉사, 편사, 자편사, 장식사, 어망사등의 각종 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견연사제조 ; 인견연사제조 ; 면연사제조 ; 스프연사제조 ; 모연사제조 ; 화학섬유연사제조 ; 봉사제조 ; 편사제조 ; 자수사제조
- 232 직물제조업
직조업을 말하며 폭12 「인치」 이상의 직물을 주된 원료에 따라 다시 세분류로 분류하고 12 「인치」 이하는 원료를 가리지 않고 일괄하여 세폭직물제조업(2325)에 분류한다. 직물의 조직(평직, 문직, 주자직) 여하는 가리지 않는다.
- 2321 면직물제조업
폭12 「인치」 이상의 면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면직물제조 ; 특방직물제조
× 고무인직물제조(2325)

- 2322 견, 인견 및 화학섬유직물제조업
견, 인견 및 화학섬유사로 폭12 「인치」 이상의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화학섬유자체의 제조업은 3125에, 화학섬유사방직업은 방직업(231)에 각각 분류한다.
○ 견방직업 ; 인견방직업 ; 나이통방직업 ; 기타화학섬유방직업
- 2323 모직물제조업
주로 방모사, 소모사를 사용하여 폭12 「인치」 이상의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단 및 담요 제조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방모방직업 ; 소모방직업 ; 직헬트제조 ; 모포제조
- 2324 마저 및 기타직물제조업
아마, 인마, 저마, 황마등의 마사 및 각종 섬유설로 부터 재생한 각종 실, 수피섬유, 지사등을 사용하여 폭12 「인치」 이상의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아마직물제조 ; 대마직물제조 ; 상포직물제조 ; 호오스지직물제조 ; 초직유제
→
- 2325 세폭직물제조업
면사, 모사, 화학섬유사 및 기타사를 원사로 하여 폭12 「인치」 이하의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메리야스 타올편조업은 여기에 분류하지 않고 기타편직업(2349)에 분류한다.
○ 리봉제조 ; 테푸제조 ; 고무인직물제조
× 메리야스타올(2349)
- 233 표백 및 염색가공업
- 2330 표백 및 염색가공업
섬유, 직물등의 표백, 염색, 날염 및 기타가공을 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써비스」업인 세탁 및 염색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 면, 마직물염색가공업 ; 스프직물염색가공업 ; 인견직물염색가공업 ; 견직물염색가공업 ; 합성섬유직물염색가공업 ; 모직물염색가공업 ; 사염색가공업 ; 메리야스 직물염색가공업 ; 섬유잡품염색가공업
- 234 편직업
「메리야스」와 기타편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메리야스」라 함은 단사 혹은 합사를 순차로 사행장으로 만곡하여 편성한 것이며 경사와 위사를 갖지 않는 점에서 직조물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편직사업체에서 편직물에 의하여 의복류를 제조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 편직업이 아닌 사업체에서 편직물을 구입하고 이를 재단, 재봉하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사업은 의복류제조업(243)으로 분류하며 편직물의 염색가공업은 2330으로 분류한다.

2341 양말제조업

양말이나 「스타킹」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양말제조 ; 나이통양말제조 ; 스타킹제조 ; 모양말제조 ; 면양말제조

2342 「메리야스」 제내의편조업

「메리야스」 제의 각종 내의류를 편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원료인 섬유의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편직은 안하고 다른 사업체에서 「메리야스」지를 구입하여 이를 재단, 재봉하여 제조하는 것은 의복류제조업(243)으로 분류한다.

- 메리야스제내의편조 ; 나이통샤쓰편조 ; 메리야스조기편조 ; 메리야스싸스편조

2343 장갑편조업

장갑을 편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편직은 안하고 다른 사업체에서 편직물을 구입하여 이를 재단, 재봉하여 제조한 장갑은 장갑제조업(2435)에 분류하며 여기서 제외한다.

- 장갑편조 ; 면장갑편조 ; 나이통장갑편조 ; 毛장갑편조

× 가죽장갑제조(2435) ; 장갑제조(일관작업이 아닌것)(2435)

2344 「메리야스」 제외의제조업

「세-타」, 「드레스」, 모자등의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편직은 안하고 다른 사업체에서 편직물을 구입하여 이를 재단, 재봉하여 제조하는 외의제조사업은 의복류제조업(243)으로 분류한다.

- 세타편조 ; 코오트편조 ; 모자편조 ; 운동복편조 ; 드레스편조 ; 수편외의편조 ; 스키복편조 ; 야회복편조

2349 기타편직업

평면 또는 원형의 「메리야스」 편조업, 일관작업에 의한 모기장편조, 「메리야스」 제 「카텐」 편조업 및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편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어망제조업은 2352로 분류한다.

- 메리야스지편조 ; 모기장편조 ; 메리야스제카텐편조 ; 메리야스타울편조 ; 메리야스부포편조 ; 목도리편조 ; 어깨걸이편조

× 어망제조(2352)

235	망 및 망제조업(고공품제외)	마, 균마, 면, 지, 야자섬유, 아마 및 기타섬유등을 사용하여 「로오푸」와 망 유사제품 및 어망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고공품은 고공품제조업(2392)에 분류한다.
2351	「로오푸」제조업	대마, 황마, 면, 지, 및 기타섬유를 사용하여 망류(로오푸)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류와인제조 ; 로오푸제조 ; 코테이지제조 ✖ 새끼제조(2392)
2352	어망제조업	어망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39	상계이외의 직물제조업	초제품 및 고공품제조업과 이상 타에 분류되지 않은 직물공업을 말한다.
2391	초제자리제품제조업(고공품제외)	왕골돗자리, 방석과 같은 초제까래제품제조업을 말한다. 단 고공품제까래는 고공품제조업(2392)로 분류한다. ○ 다다미제조, 왕골자리
2392	고공품제조업	가마니, 새끼, 명석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자가생산원료를 사용하여 고공품을 제조할 때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2399	상계이외의 직물제품제조업	인조피혁, 유포, 방수포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팅」, 「페딩」, 「왜딩」 및 모든 종류의 가구류에 사용하는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된다. 「레스」, 「伦프」심지, 끈류, 「가제」, 봉대, 일관작업에 의한 「헬트」모자제조등도 여기에 포함한다. 단 제면업, 조타면업은 「썩어비스」업에 분류한다. ○ 레스제조 ; 유포제조 ; 탈지면제조 ; 가제제조 ; 섬유제위생재료제조 ; 리노리움제조 ; 직물로피복한고무끈

24

화류, 의복류 및 장신품제조업

구입한 직포, 「메리야스」지, 「헬트」지등의 각종 직물과 구입한 피혁을 재단, 재봉하여 화류, 의복류, 장갑, 모자 및 장신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중분류의 각종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분류하지 않으며 그 원재료의 제조업에서 이 중분류의 제품을 일관작업으로 생산하고 있을때에는 그 원재료제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한다. 예컨대 일관작업에 의하여 내의, 장갑, 양말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은 편직업(234)으로 분류하며 또 제혁공장에서 혁제화류, 의류까지 제조하고 있을때에는 제혁업(2910)에 분류한다.

241

화류제조업(고무신류제외)

구입한 피혁, 직물, 「프라스틱」, 목재 및 기타재료를 사용하여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고무신류, 운동화, 고무장화등은 고무신류제조업(3020)으로 분류하고 일관작업으로 혁제화류까지 제조하는 제혁공장은 제혁업(2910)에 분류한다.

2411

혁제화류제조업

피혁제의 단화, 장화, 편상화, 「스踣퍼」 및 「산다루」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피혁재단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나 수선업 또는 제조와 수선을 겸한 사업은 2420(화류수선업)으로 분류하고 제혁공장에서의 일관작업에 의한 혁제화류제조업은 제혁업(2910)에 분류한다.

○ 피화제조 ; 가죽스릴피제조 ; 가죽산다루제조 ; 혁제장화제조 ; 단화굽제조 ; 혁제바레-스릴피제조 ; 구두곁가죽제조 ; 피화부속품제조(혁제)

× 고무제화류제조(3020) ; 운동화제조(3020) ; 훈련화제조(3020)

2419

상게이외의 화류제조업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피혁이나 고무제가 아닌 각종화류 또는 각종 화류의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프라스틱제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3940)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조와 수선을 겸한 사업체는 2420(화류수선업)으로 분류한다.

○ 짚신제조 ; 유리구두제조 ; 헬트장화제조 ; 목제화류제조 ; 각반제조 ; 화류재료제조(비피혁제)

× 구두끈제조(2399) ; 고무제화류제조(3020) ; 비니루화제조(3940)

242

화류수선업

2420

화류수선업

모든 화류의 수선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수선과 제조를 겸한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한다.

243

의복류제조업

직물, 괴혁, 모피 기타의 구입한 재료를 재단, 재봉하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종 모자들, 모자(남녀용) 및 대류를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이 분류중의 중요한 항목을 들면 외의 및 내의 ; 「헬트」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각종 모자 ; 모피제품 ; 장갑류(장갑편조업에 속하지 않는것) ; 멜방 및 유사품 ; 우의 및 기타방수용외의 ; 괴혁제의복류 ; 의복용대(재료종류불문) ; 「항카치」 등이다. 의복류제조업은 직물소매업과 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면 이 분류에 분류하고, 직물소매가 주면 「상업」으로 분류하며 여기서 제외된다. 타업자가 지참한 직물을 사용하여 가공임을 받고 의복류를 제조하는 것도 여기에 분류한다. 세탁, 대림질, 수선업은 「써어비스」 업으로 분류하며, 이 분류에서 제외된다. 편직공장(메리야스공장)에서의 일관작업에 의한 의복류등 제조업은 234(편직업)에 분류한다.

2431

남자용외의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소년이상의 남자용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432

여자용외의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소녀이상의 여자용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433

소아용외의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소아용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434

내의제조업

재료, 형태 및 남녀용을 가리지 않고 내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내의제조 ; 샤쓰제조 ; 콘비네인순제조 ; 뺀스제조 ; 스로스제조 ; 슈미스제조 ; 침의류제조 ; 와이샤쓰제조 ; 페티코오토트제조 ; 자켓제조

2435

장갑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구입한 재료를 재단 재봉하여 장갑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편직공장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장갑을 편조하는 사업은 장갑편조업(2343)으로 분류한다.

○ 직물제장갑제조 ; 괴혁제장갑제조 ; 직물괴혁혼용장갑제조

✗ 메리야쓰제장갑편조(2343)

2436

우의 및 기타방수용외의제조업

우의 및 기타방수용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각종우의제조 ; 잠수복제조

✗ 우산 및 양산제조(3991)

2437	모자류제조업
	「헬트」지와 기타원료를 구입하여 모자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일관작업에 의한 동일한 작업장에서의 「헬트」모제조업은 상게이외의 직물제품제조업(2399)으로 분류한다.
2439	기타장신품제조업
	재료를 가리지 않는 기타의 장신의류제조업으로서 「넥타이」, 「칼라」, 「마후라」, 「부래제어」, 장신용「반드」, 손수건, 베선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허리띠제조 ; 넥타이제조 ; 직넥타이제조 ; 마후라제조 ; 스카프제조 ; 형카치제조 ; 베선제조 ; 칼라제조 ; 암빈드제조 ; 혁대제조
249	기타섬유제품제조업(의복류제외)
2490	기타섬유제품제조업(의복류제외)
	구입한 직물 또는 편조물을 사용하여 「커텐」 「씨트」, 「벼개」, 「나푸킨」, 테이블거리, 모포(이불), 침대거리, 세탁대, 의자「카바」, 직물대, 천막제품, 「트리밍」, 자수품류, 기류(삼각기포함) 및 무역용 「시청」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침구제조 ; 이불제조 ; 침대보제조 ; 벼개제조 ; 침구용카바제조 ; 자수제조 ; 천막제조(범포) ; 씨트제조 ; 마대제조 ; 면대, 스-프대제조 ; 기제조
	✗ 섬유제가방제조(2922) ; 학생용가방제조(2922) ; 차일품제조(2699)
25	제재 및 목제품제조업(가구류제외)
	각재, 판재, 「베니야」판 및 합판등의 목재기초자재를 제조하는 사업 ; 목재, 죽재, 등 및 「콜크」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등을 말한다. 개인의 주문을 받아 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나 가구 및 건구제조업은 가구제조업(26)에, 목제약기제조업은 상게이외의 제조업(399)에, 나전칠기제조는 칠기제조업(395)에, 운동구, 완구등의 제조업은 완구 및 운동구제조업(3993)에 각각 분류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일부로서 행하는 목제품의 제조, 목재에 의한 수선 및 개축등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251	제재업
2510	제재업
	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각재 또는 판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장소는 임야이건 아니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임가공제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나 별목 및 목재절단업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 제재업 ; 제판업 ; 목림소할업(신제조제외) ; 당목제재업 ; 상주제재업 ; 지붕판제조 ; 간목제조 ; 침목제조 ; 지주제조 ; 완목제조 ; 상판제조 ; 위탁임가공제재업
	✗ 목상자제조업(2530)

252	합판 및 「베니야」 단판제조업
2520	합판 및 「베니야」 단판제조업 「베니야」 단판, 합판 및 측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베니야단판제조 ; 합판제조 ; 측합판제조 ; 적층제제조
253	목상자 및 목통류제조업
2530	목상자 및 목통류제조업 목상자 및 목통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도시락용 목상자류제조업은 259(기타목재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 ○ 제함업 ; 목상자제조 ; 베니아함제조 ; 수송용목제도라무제조 ; 포장목상자제조 ; 공구목상자제조 ; 목통류제조 × 도시락목상제조(2590) ; 죽제상자제조(2540)
254	죽재, 등 및 「콜크」 제품제조업
2540	죽재, 등 및 「콜크」 제품제조업 죽재, 등, 「콜크」를 사용하여 용기와 기타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죽제 및 등제가구제조업은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26)에, 수선은 상계이외의 제품제조업(3099)에 각각 분류한다. ○ 죽제용기제조 ; 죽제품제조 ; 죽제상자제조 ; 죽제광주리제조 ; 행이제조 ; 죽관제조 ; 콜크병마개제조 × 죽제가구제조(2610) ; 죽합판제조(2520) ; 죽제수선(3999) ; 지우산 및 비니루우산(3991)
259	기타목제품제조업
2590	기타목제품제조업 창의틀, 목제계단, 도시락용목상자, 화류의형, 사진틀, 주판, 목판, 목제세탁판, 목저, 성냥의 축목, 목관등 상계이외의 목제품제조업을 말한다. ○ 목관제조 ; 목제발판제조 ; 각종목형제조 ; 산반제조 ; 목제계단제조 ; 목저제조 ; 목조각물제조 ; 도시락용상자류제조 ; 세탁판제조 ; 경틀제조 ; 사진틀제조 ; 목형제조 ; 양복거리제조 ; 성냥축목제조 ; 목접시제조 ; 창틀제조
26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일반가정, 사무소, 오락장 및 식당등에서 사용되는 가구 또는 사무실 및 상점에 장치품 그리고 창문류, 차양품과 차일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같은 제품의 사용재료의 종류는 이를 가리지 않는다. 칠기류 또는 나전칠기제조는 기타제조업(39)에 분류한다.

- 261 가정용 및 사무용가구제조업
- 2610 가정용 및 사무용가구제조업
- 주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보통 사용되는 가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장농류, 경대, 책상, 식탁류, 목제화로, 찬장, 서가, 침대, 선반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 집합소, 도서관, 영화관등에서 사용되는 가구와 연구실, 병원등의 전용을 위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제품제조도 여기에 분류한다.
- 장농제조 ; 경대제조 ; 책상제조 ; 죽제가구제조 ; 양식가구제조 ; 의자제조 ; 테이블제조(금속제포함) ; 학교용목제가구제조 ; 아동용가구제조 ; 서가제조 ; 목제침대제조 ; 찬장제조 ; 가구수선 ; 병원용목제가구제조 ; 가구도장업 ; 냉장고(전기용제외)
- ✗ 종교용구제조(2699) ; 전기냉장고제조(3730)
- 269 기타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 사무실용 및 상점용 장치품과 가구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691 건구제조업
- 창문, 「도어」, 창지문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건구제조 ; 「도어」제조 ; 난간제조 ; 수스마제조
- ✗ 창틀제조(목재)(2590)
- 2692 사무실 및 점포용장치품제조업
- 진열장, 진열 「케이스」등의 상점 및 사무실의 장치품의 유사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다.
- 진열장제조 ; 사무소용비품제조 ; 사무소용간막이제조
- ✗ 금고제조(3590) ; 전기냉장고제조(3730) ; 냉장고제조(전기용제외)(2610) ; 금고내상자제조(3590)
- 2699 기타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 차양품, 차일품류, 전풍등의 상계이외의 가구 및 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차양과차일류제조(부분품및부속품제외) ; 전풍제조 ; 표구제조 ; 흑판제조 ; 종교용구제조
- ✗ 죽제가구제조(2610)

- 27 지류 및 지류제품제조업
목재, 파지, 고섬유 및 기타식물원료로부터 「팔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런 지류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감광지제조업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3199)에, 연마제품제조업은 연마제품제조업(3393)에, 「카본」「스탠실」지제조업은 펜, 연필 및 기타사무용품제조업(3960)에, 「타루」지제조업은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3229)에 각각 분류한다.
- 271 「팔프」 및 지류제조업
- 2711 「팔프」 제조업
목재, 목재설, 고섬유 및 파지등으로 각종 「팔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712 신문용지 제조업
신문용지의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2713 모조지 및 편면용지 제조업
모조지와 편면용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714 크라프트지 제조업
크라프트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715 기타양지류 및 선화지제조업
선화지, 권연지, 박엽지 및 「노오트」지와 같은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716 「카아드」판지제조업
건축용판지를 제외한 「카아드」판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마니라보오드
- 2717 한지제조업(선화지제외)
창호지, 백지와 같은 한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구매한 지류를 원료로 하고 있는 유지가공업은 가공지제조업(2721)에 분류한다.
- 2718 건축용지 및 판지제조업
후지와 같은 건축용지를 제조하는 사업과 「카아드」판지를 제외한 판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석면지, 장판지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 단보오루지제조 ; 휠트지제조 ; 루우평지제조
- ✗ 장판지제조(2721)

272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일관작업제품은 제외)

구입한 지류를 사용하여 지대, 지제용기, 봉통 및 벽지와 같은 지류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721 가공지제조업

벽지, 색지, 장판지와 같은 가공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유지가공지제조 ; 합성수지가공지제조 ; 포장가공지제조 ; 아트지제조 ; 방창

지제조 ; 절연지및절연지테프제조 ; 납지제조 ; 유지제조 ; 벽지제조

- ✗ 인화지제조(3199) ; 카아봉지제조(3960) ; 등사용원지(3960)

2722 지대 및 봉투제조업

지대 및 봉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씨멘트지대제조 ; 소맥분지대제조 ; 석회지대제조 ; 비료지대제조 ; 사탕지대

제조 ; 봉투및소형지대제조

2723 지제상자 및 지제용기제조업

지상자, 지컵 및 기타지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단보오루상자제조 ; 한지제용기제조

- ✗ 지대제조(2722)

2729 기타지류 및 판지제품제조업

지류, 화장실용휴지, 「타올」지, 「나프킨」지등과 같이 기타의 구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지류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우산제조업은 우산 및 양산제조업(3991)에, 부채류제조업은 3999(상계이외의 제조업)에 분류한다.

- 세로팡제조 ; 섬유판제조 ; 지타올및지내프킹제조 ; 지테-프제조 ; 지절단정리

업 ; 세로팡대제조 ; 지연사제조 ; 지제컵제조 ; 화이바-제의관, 지튜브, 지드럼

제조 ; 휴지제조

- ✗ 지우산제조(3991) ; 부채류제조(3999)

28 인쇄, 출판 및 동 유사업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지도, 악보, 명부등의 간행물출판업 ; 자신이 출판하지 않는(발행인을 위한) 인쇄업 ; 자신이 인쇄하지 않는 출판업, 원부, 회계부, 영수증, 패지등제조업 ; 서적 또는 지류의 채색, 장식과 같은 제본부수업 ; 노오토제조업 ; 활판, 조판, 동판, 아연판제조업과 같은 인쇄업을 위한 써어비스업을 말한다.

그러나 금속활자편조업 및 인쇄목적이 아닌 조각업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359)에, 귀금속조각업은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393)에 각각 분류한다. 등사업과 청사진업은 여기서 제외하고 이를 써어비스업에 분류한다.

281 신문발행업

2810 신문발행업

신문의 인쇄 및 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발행하지 않고 발행자를 위하여 신문의 인쇄만을하는 사업은 상업적인쇄업(840)에 분류한다. 신문 및 잡지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써어비스업에 분류한다.

○ 신문사 ; 신문인쇄발행업 ; 주간신문발행업

✗ 통신사 ; 신문사의지사및지국

282 서적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2820 서적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서적, 정기간행물, 「팜푸렐」등과 같은 것을 인쇄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신이 인쇄치 않고 출판만을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발행인을 위하여 인쇄만을 하는 사업은 상업적인쇄업(2840)에 분류한다.

○ 서적출판업 ; 정기간행물출판업 ; 교과서출판업 ; 월간잡지출판업

283 기타인쇄물출판업

2830 기타인쇄물출판업

「카렌다」, 넷텔, 악보, 명부, 그림엽서등의 상계이의의 인쇄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판만을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카렌다출판업 ; 지도출판업 ; 지명인사명부출판업 ; 그림엽서출판업

284 상업적인쇄업

2840 상업적인쇄업

타인인 발행자를 위하여 서적, 정기간행물, 「팜푸렐」, 사진, 지도, 명부, 서식 및 기타인쇄물을 인쇄하는 사업을 말한다.

등사업과 청사진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기타대기업써어비스업중 속기등사 및 청사진업에 분류한다.

금속인쇄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철(凸)판인쇄업 ; 평판인쇄업 ; 요(凹)판인쇄업 ; 활판인쇄업 ; 금속인쇄업 ; 목재인쇄업 ; 그拉斯인쇄업 ; 세루로이드인쇄업 ; 비니루인쇄업 ; 상업적인쇄업

× 등사판인쇄업(써어비스업)

285 「노오트」, 장부 및 유사품제조업

2850 「노오트」, 장부 및 유사품제조업

「노오트」, 기록장부, 영수증용지 및 부전지등의 사무용유사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86 식자업 및 인쇄용원판제조업

2860 식자업 및 인쇄용원판제조업

타인쇄업자를 위한 식자, 조판, 강판, 동판, 사진판, 아연판등 인쇄를 위한 원판의 제조업과 기타화판등 타에 분류되지 않는 인쇄업에 부수하는 보조업무를 말하며 목판과 사진판제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식자업 ; 지형연판제조 ; 전기판제조 ; 플라스틱판제조 ; 고무판제조 ; 사진판제조 ; 사진식자업 ; 동요(凹)판조각업 ; 목판조각업 ; 아연판제조 ; 옵셋트교정업

287 제본업 및 유사업

2870 제본업 및 유사업

장부, 「앨범」등 기타 서적의 재단, 봉철 및 장정등 제본 및 인쇄물의 가공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인쇄물가공업 ; 제본업 ; 인쇄물절첩업 ; 인쇄물재단업 ; 인쇄물장정업

29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화류 및 의복류제외)

각종 원피의 유제, 조정, 완성등과 각종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트렁크, 포류의 제조업은 원료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분류하며 제혁공장에서의 혁제화류제조는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나 혁제화류는 혁제화류제조업(2411)에, 혁제의류는 의복류제조업(243)에, 혁제완구 및 운동용구제조업은 완구 및 운동용구제조업(3993)에 각각 분류한다.

291 제혁업

2910 제혁업

각종 원피의 유제, 조정 및 완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그것에 장식가공을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피혁제조 ; 혁제조 ; 혁완성업 ; 염혁업 ; 수산피혁제조

292 피혁제품제조업(화류 및 의복류제외)

공업용 또는 비공업용 피혁제품 및 피혁과 피혁대용품으로 제조하는 트렁크 및 포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혁제화류(2411)나 혁제의복류(243)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2921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

공장용피혁 「벨트」, 「박킹」 및 방직기용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박킹제조(피혁제) ; 「캐스길」 제조 ; 방적용애프론밴드제조 ; 공업용혁벨트제조 공업용 「박킹」 제조

✗ 혁제장갑제조(2435)

2922 포류제조업

재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포류, 책가방, 「핸드백」 등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혁제가방제조(대형) ; 섬유제가방제조(대형) ; 트렁크제조 ; 학생가방제조 ; 등산용가방제조 ; 패스포드제조 ; 금속제트렁크제조 ; 서류포류제조 ; 핸드백제조 ; 연초케이스제조

✗ 마대제조(2490) ; 면대제조(2490)

2929 기타피혁제품제조업

마구, 혁제시계 「밴드」, 기타의 혁제품등 상게이외의 혁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마구제조(피혁 및 유사제조) ; 완시계혁제조 ; 차량용피혁제손잡이

30 고무제품제조업

천연 및 합성고무를 사용하여 「타이어」, 「튜브」, 고무신류, 호스, 벨트 및 고무잡제품등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물 및 폐품고무의 재생, 「타이어」의 재생업도 역기에 분류한다.

30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30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자동차와 기타차량에 사용되는 각종 고무 「타이어」 및 「튜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타이어」 재생업은 「타이어」 재생업(3040)에 분류한다.

302 고무제화류 및 부속품제조업

3020 고무제화류 및 부속품제조업

고무신, 고무장화, 운동화, 훈련화와 같은 고무제화류나 그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물 「타이어」, 고물 「튜부」 및 기타를 사용하여 화류부속품을 제조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 고무신제조 ; 운동화제조 ; 노동화제조
- ✗ 고무제구두창제조 ; 고무제화류부속품제조

303 재생고무제조업

3030 재생고무제조업

고물 「타이어」, 고물 「튜부」 및 기타 폐물고무를 사용하여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04 「타이어」 재생업

3040 「타이어」 재생업

중고 또는 고물 「타이어」를 재생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이야수리업은 이 분류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수리업(3840) 및 자전차수리업(3852)에 분류한다.

305 공업용고무제품제조업

주로 고무를 사용해서 고무호오스, 고무벨트, 정곡용고무로오라 및 기타 공업용 고무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051 고무벨트제조업

평형벨트와 v형벨트등과 같은 고무 「벨트」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고무벨트제조 ; 콘베아고무벨트제조
- ✗ 타이아제조(3010) ; 튜부제조업(3010)

3059 기타공업용고무제품제조업

고무벨트를 제외한 고무호스, 정곡용고무로라 및 기타 공업용 고무부분품과 같은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고무박킹제조 ; 공업용튜부제조 ; 공업용고무대제조 ; 고무로오루제조 ; 자동차용고무부분품제조 ; 고무호오스제조

309 기타고무제품제조업

3090 기타고무제품제조업

「타이어」의 보수재료, 의료 및 화학용고무제품등과 같은 상계이외의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고무포제조(타이어, 튜부, 보수용) ; 재생타이어, 튜부용연생지제조 ; 의료고무제품제조 ; 위생고무제품제조 ; 유수제조 ; 고무풀제조 ; 이화학용고무제품제조

3129 기타공업용기본화학제품제조업

크롬산, 봉산, 불화수소산, 유산취소, 옥화물, 취화물옥도, 나토리움포티슘, 탄산석회, 마그네슘, 카리염, 콜탈(석회산, 밴줄, 나프타린, 크래솔포함), 염료, 합성수지(인조섬유, 인조고무) 및 유산물염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크롬산제조 ; 봉산제조 ; 유산염제조 ; 취소취화물제조 ; 유산제조 ; 초산은제조 ; 마그네슘제조 ; 옥도제조 ; 콜탈제품제조 ; 합성석탄산제조 ; 합성염료제조 ; 염료의약중간물제조 ; 발효공업 ; 공업용주정 ; 아세찌렌유도품 ; 에찌렌유도품제조 ; 합성수지제조(가소물소지제조 ; 세루로이드생지제조 ; 염화비니루제조 ; 인조고무제조)

✗ 조제용약품제조(3140) ; 코오크스부산물제조(3290) ; 소주제조(2110)

313 동식물유지제조업

식물종자를 압착 또는 추출함으로서 원유, 유박, 박분을 생산하고 식물성원유, 오리브유, 동물유지의 추출과 정제 및 경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조제의 동식물유지를 구입하여 「마가린」, 조리용유지와 식탁용유 또는 「사라드오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식료품제조업(20)에 분류한다.

3131 식물유지제조업

면실, 대두, 깨, 낙화생, 동실등의 식물종자로 부터 식물유지와 그의 부산물인 촉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식물유지의 정유업을 말한다.

그러나 조제의 식물유를 구입하여 정제하는 조미용기름정제업은 식료품제조업(20)에, 의료용식물유지정제업은 의약품제조업(314)에 각각 분류한다.

○ 식물유제조 ; 촉유업 ; 대두유제조 ; 종유제조 ; 낙화생유제조 ; 아마유제조 ; 동유제조 ; 오리브유제조

✗ 식용식물유정제업(2099) ; 의료용식물유지정제업(3140)

3132 동물유지제조업

동물유지제조업과 그의 정제 또는 경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조제의 동물유지를 구입하여 의료용 유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의약품제조업(314)에, 동물성식용유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식료품제조업(20)에 각각 분류한다.

○ 우지제조 ; 돈지제조 ; 경유제조 ; 어유제조 ; 육장유제조

✗ 의료용동물유지제조(314)

314 의약품제조업

3140 의약품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유기 또는 무기합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수용의약품제조업 및 인삼과 같은 식물성생약의 조제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 혈청제조 ; 와진제조 ; 약용식물조제업 ; 약초제품제조 ; 한방약제조 ; 합성의약품제조 ; 비타민제조 ; 호루몽제조 ; 폐니시링제조 ; 스트렙트마이싱제조 ; 의약용유기약품제조 ; 매약제조 ; 갈셀제조

- 315 비누제조업
- 3150 비누제조업
형태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비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비누제조 ; 화장비누제조 ; 세탁비누제조 ; 카리비누제조
× 비누이외의세제제조(3199) ; 샴푸제조(3199)
- 316 도료제조업
- 3160 도료제조업
「페인트」, 「와니스」(전기절연「와니스」를 포함), 「에나멜」, 「라카」, 「바데」, 주정「와니스」 및 기타도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무기 및 유기안료의 제조업은 무기 및 유기안료제조업(3126)에, 수화구제조업은 「펜, 연필 기타 사무용품 및 화가용품제조업」(3190)에 분류하고 여기서는 제외한다.
○ 에네멜제조 ; 와니스제조 ; 페인트제조 ; 수성도료제조 ; 선저도료제조
× 회구제조(3960) ; 안료제조(3126)
- 317 성냥제조업
- 3170 성냥제조업
성냥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성냥의 축목과 갑지만을 제조하는 사업을 기타목제품제조업(2590)에 분류한다.
○ 성냥제조
× 성냥축목제조 ; 성냥갑제조
- 31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인쇄용잉크, 향료 및 화장품류, 농약, 양축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학용이나 사무용품 또는 화가용품은 「펜, 연필 및 기타사무용품제조업」(396)에 분류한다.
- 3191 인쇄용잉크제조업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인쇄용 잉크제조
× 묵제조(3960)
- 3192 향료 및 화장품제조업
향료, 「코스메틱」 및 화장품제조업, 「크림」, 치약, 두발용염료, 「로숀」, 「코스메틱」분, 세탁세제용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향료제조 ; 화장품제조 ; 구두약제조 ; 구리세링제조 ; 보마아드제조

3193	농약제조업
	살충, 살균제로 사용할 농약을 제조 및 혼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살충제제조 ; 살균제제조 ; 살비제제조 ; 제초제제조
319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양축, 사진감광재료등 타에 속하지 않는 화학제품제조업을 말한다.
	○ 천연염료제조 ; 세라찌(접착제)제조 ; 사진필름제조 ; 인화지제조 ; 건판제조 ; 감광지용화학약품제조
	× 사진필름용세루로이드제조(3129) ; 필기용잉크제조(3960)
32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석유정제업, 연탄 및 「마세크」 탄제조업,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말한다.
321	석유정제업
3210	석유정제업
	원유에서 「개소린」, 연료유, 윤활유, 등유, 기타 석유생산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폐유재정제업도 포함된다.
	○ 석유정제업 ; 개소린제조(원유로부터) ; 바라膑정제업 ; 윤활유제조 ; 기계유제조 ; 구리이스제조 ; 폐유재정제업
322	연탄제조업
	모든 형태의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주로 석탄, 「핏취」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기타 점결제를 혼합하여 연탄, 마세크탄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221	「마세크」제조업
	난형과 구멍이 없는 「마세크」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222	공탄제조업
	모든 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공탄, 19공탄등 각종공탄
329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290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즉 「아스팔트」용, 도로포장용, 지붕용등의 자재, 「탈」, 「코오크스」 및 「쎄미코크」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석유정제업자에 의하지 않는 윤활유, 「그라이스」제조업등 상게이외의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포장재료제조 ; 포장혼합물제조 ; 코오크스제조 ; 반성코오크스제조
	× 윤활유제조(석유정제업자에 의한것)(3210)

33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첨토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도기, 자기, 토기제조업, 「씨멘트」제조업, 「콩크리트」제조업 및 기타석탄이외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말한다.

석탄제품제조업은 연탄제조업(322)에 분류하고 광산이나 채굴채석업에 있어서 광물의 철단, 분쇄, 연마하는 사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331 구축용첨토제품제조업

벽돌, 기와, 「파이프」, 「타일」, 「크루시블」, 「스토부라이닝」용품, 「테라코타」(적토소소), 연통용품등 내화품과 같은 구축용 첨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311 벽돌제조업(콩크리트제품제외)

첨토제구축용 벽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씨멘트」제는 「콩크리트」제품제조업(3350)에 분류한다.

○ 벽돌제조

✗ 부록크, 씨멘트제벽돌제조(3350)

3312 기와제조업

첨토제기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씨멘트」제기와제품은 「콩크리트」제품제조업(335)에 분류된다.

○ 기와제조(첨토제)

3313 「타일」제조업(기와류제외)

기와류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타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석제 「타일」은 3392에, 석면제 「타일」은 3399에 분류한다.

○ 타일제조 ; 에나멜타일 ; 유약타일제조

3314 내화품제조업

재료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내화연화, 도가니용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319 기타구축용첨토제품제조업

화로용품, 연통 「파이프」와 같이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구축용첨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테라코타제조 ; 스토오브 ; 라이닝용품제조 ; 화로류제조

33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학「렌즈」의 제조업과 연마업은 사전기 및 광학기계기구제조업(3921)에 분류한다.
3321	판유리제조업
	모든 형태의 판유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유리제품가공업은 3323에 분류한다.
	○ 판유리제조 ; 색판유리제조 ; 스리ガ라스제조 ; 안전유리제조(일관작업에 의한 것) ; 형판유리제조 × 스리ガ라스제조(구입한 판유리를 사용) (3323) ; 안전유리제조(구입한 판유리를 사용) (3323)
332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판유리제외)
	광학유리제조업과 용해로를 가지고 유리용기, 과학용 및 의료용, 전구용 유리기구, 탁상용 및 부엌용 유리기구, 기타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광학「렌즈」의 연마업은 광학기계기구 및 「렌즈」제조업 (3921)에 분류한다.
	○ 맥주병제조 ; 술병제조 ; 사이다병제조 ; 화장품병제조 ; 잉크병제조 ; 후라스코제조 ; 비이카제조 ; 표본병제조 ; 투약병제조 ; 컵제조 ; 쟁반제조 ; 잉크스텐드제조 ; 샌테리아용제조 ; 전구용유리제조 ; 안경용유리제조 ; 시험판제조 ; 자동차용유리제조 × 광학렌즈제조(3921) ; 전구제조(3750)
3323	유리제품가공업
	구입한 유리소지를 가공하여 유리제접씨, 거울, 시계용유리 및 인조진주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광학용렌즈는 3921에 속하고 안경제조업은 3922에 분류한다.
	○ 합판유리제조(구입한 유리를 사용) ; 거울제조 ; 시계유리제조 × 광학렌즈제조(3921) ; 안경렌즈제조(3922) 인조진주제조(유리제아닌것) (3399)
333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제조업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331	부엌 및 탁상용 도자기제조업(토기제외)
	가정, 호텔, 식당용등의 식기, 컵, 분, 화병과 같은 부엌 및 탁상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식기제조(도자제) ; 도자제부엌기구제조 ; 화병제조(도자제) ; 램프대제조 ; 풍로제조(도자제)

3332	전기용도자기제조업	각종 전기용 도자기제, 절연용품, 도자제전열기구부분품, 기타전기용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절연재료제조(도자제) ; 뚜꺼비집제조
3333	토기제조업	부엌용품, 독, 토판등과 같은 토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독 ; 두루미 ; 토판 ; 토제솟 ; 기타토기제조
3339	기타도자기제조업	욕실, 화장실, 세면장의 도자체부속품, 변기, 수조, 청원용품등과 같은 상계이외의 도자제품 및 공업용도자토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위생도자기제조 ; 이화학용도자토기제조 ; 공업용도자토기(내산, 내알카리, 내열용품)제조 ; 도자토기가공업
334	씨멘트제조업	
3340	씨멘트제조업	모든 형태의 포오트랜드씨멘트, 고로씨멘트, 천연씨멘트 및 수경성씨멘트등 각종 수경성씨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포오트랜드」씨멘트제조 ; 고로씨멘트제조 ; 「실리커」씨멘트제조 ; 수성씨멘트제조 × 기경성씨멘트제조(3399) ; 생콩크리이트제조(3350)
335	콩크리트제품제조업	
3350	콩크리트제품제조업	벽돌, 부력, 파이프, 지붕용스래이트, 도관, 전주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콩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콩크리이트관제조 ; 콩크리이트전주제조 ; 수도용씨멘트제품제조 ; 생콩크리이트제조 ; 씨멘트제지붕용스래이트
3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회 및 석고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연마재, 석면제품제조업, 흑연제품제조업 및 기타 상계이외의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391	석회제조업	석회석을 사용하여 생석회, 소석회, 석고석회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석회제조 ; 생석회제조 ; 석회도로마이드제조

- 3392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연마재료제외)
채석장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한 석재, 비석 및 건축용석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석재제조 ; 석세공업 ; 대리석제품제조 ; 석재조각품제조 ; 묘석제조 ; 비석제조 ; 석재타일
× 석재가구제조
- 3393 연마재료제조업
그라인딩, 연마포, 연마지 및 현미기용 연마용품과 같은 연마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연마재료제조 ; 연마지석제조 ; 연마포및연마지제조
- 3399 상계이외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면타일, 백목, 스파이트, 석필과 같은 상계이외의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석면제품제조업, 흑연제품제조업, 석필, 분필등 타에 속하지 않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 분류된다.
○ 흑연전극제조 ; 탄소봉, 탄소판제조 ; 인조보석제조(유리제아닌것) ; 암면제품제조 ; 석면포및사제조 ; 석면지제조 ; 석면박킹제조 ; 석면판제조 ; 쇄석업 ; 석분제조 ; 화학용점토제조 ; 운모정제업 ; 석필제조 ; 백목제조 ; 인조석제조 ; 운모판제조 ; 기경성씨멘트제조 ; 석면스레트 및 판제조
× 인조흑연제조 ; 석유제품제조
- 34 제1차금속제조업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제1차생산품을 제조하는 제련업, 정련업, 압연, 신선 및 합금업 주조 및 단조업등을 말한다.
- 341 제1차철강제조업
광석 또는 고철로 부터 철 및 강을 제조하는 사업, 원판, 박판, 대강, 강관, 레루, 선재등의 기본형으로 재압연하는 사업, 양철판제조업, 주물제조업, 단조업과 같은 용광로에 의한 용해로 부터 중간제조단계까지의 모든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3411 제철 및 제강업
용광로(고로), 반사로, 혹은 전기로를 사용하여 철광석으로 부터 선철을 제조하는 사업, 선철 또는 고철에서 평로 또는 전로등을 사용하여 강괴, 강반성품(비렛드, 스파이트, 부롬바)을 제조하는 사업, 일관작업으로 압연까지 행하여 형강, 봉강, 선재, 후판, 박판, 대강등의 철강제품제조, 합금철제조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일관작업이 아니고 원료를 구입하는 철강압연업은 3412(철강압연업)에 분류한다.

- 고로선제조 ; 철강압연제품제조(일관작업에 의한것) ; 보통강제조 ; 전기로선제조 ; 재생로선제조 ; 원철제조 ; 전해철제조 ; 합금철제조 ; 제강업 ; 강관제조(일관작업에 의한것)

3412 철강압연업

구입한 강판, 강반성품, 합금철을 열간압연에 의하여 형강, 봉강후판, 박판, 대강, 강판등의 기본형으로 재압연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분류는 용광로를 갖지 않는 점에서 3411과 구별된다.

그러나 용광로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체는 제철 및 제강업(3411)에 분류한다.

○ 열간압연업

✗ 냉간압연업(3419)

3413 철강주물제조업

주철관, 철주물솟과 같은 조제 및 미완성품의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구입한 선철을 사용하여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로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강주물은 이분류에서 제외한다.

- 주철관제조 ; 서선주물제조 ; 철주물솟제조 ; 가단주철제조 ; 합금가단주철제조 ; 강주물제조

3414 철강신선업

구입한 선재, 봉강으로부터 철선, 철사, 경강선, 피아노선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시 이러한 철선을 사용하여 제2차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된다.

철강제조나 압연업에 있어서의 신선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철선제조(구입한 선재를 사용한것) ; 경강선제조 ; 피아노선제조 ; 철정제조(신선에서 일관작업에 의한것)

3419 기타제1차철강제품제조업

구입한 박판, 대강등으로부터 냉간압연에 의하여 냉연강판, 마대강등의 냉간압연강재를 제조하는 사업 ; 구입한 박판, 대강등으로부터 「부릿끼」(대부릿끼 포함), 아연도철판(아연도대강 포함), 연, 알미늄등의 도금을 하여 강판, 대강, 강판, 철강선등의 도금강재를 제조하는 사업과 같은 상계이외의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강단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342 제1차비철금속제조업

비철금속 즉 금, 은, 동, 연, 아연, 망강 및 중석등의 제련업과 정련업, 비철금속잉코트, 봉, 빌렛 및 주물과 같은 기본형으로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3421 동제련 및 정련업
동광석을 처리하여 동의 제련 및 정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동제련및정련업 ; 동제조 ; 전기동정련업
× 동압연및신선업(3423)
- 3422 동이외의 비철금속제련 및 정련업
아연, 금, 은, 망강 및 중석과 같은 동이외의 비철금속제련 및 정련업에 종사하는 사업을 말하며 고금속(설) 또는 「드로스」를 처리하여 동이외의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연제련및정련업 ; 아연제련및정련업 ; 알미늄제련및정련업 ; 귀금속제련및정련업 ; 수은제조및정련업 ; 비철금속재생업
× 비철금속압연신선업(3423)
- 3423 비철금속압연신선업
비철금속과 그의 합금을 후판, 박판, 대선, 관등의 기본형으로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동압연업 ; 동합금압연업 ; 동선제조(전기용제외) ; 동합금제조 ; 동관제조 ; 연, 동합금압연업 ; 알미늄, 동합금압연업
× 괴복전선, 케이블제조(3740)
- 3424 알미늄주물제조업
알미늄과 알미늄합금을 주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알미늄주물제조
- 3425 비철금속주물제조업(알미늄주조제외)
알미늄주조업을 제외한 비철금속을 주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비철금속주물제조 ; 비철금속다이캐스트제조
- 3429 기타제1차비철금속제품제조업
비금속과 그의 합금의 단조업 기타 상게 이외의 제1차비철금속제품의 제조업을 말한다.
○ 비철금속단조제조 ; 비철금속분말제조 ; 비철금속샤아링업 ; 비철금속소입업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수송용 기계기구제외)

제1차금속제품을 사용하여 양철관 및 기타 철판제품, 수공구류인물류, 철기 및 철물류, 금속인, 전기식이외의 가열조명장치, 와이야제품, 금속제용기, 금고 및 저금통, 철제스프링, 볼트, 낫트, 리벳트, 압출튜부, 소병기 및 부속품을 포함한 대포, 기타에 속하지 않는 각종 금속제품과 같은 완성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범랑철기류제조, 도금업등도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제품 및 메탈류제조업은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3930)에, 전기기계를 제외한 기계제품제조업은 기계제조업(36)에, 전기기계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37)에,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38)에, 계측, 조정용기계기구, 의료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제조업(39)에 각각 분류한다.

351 양철관 및 기타철판제품제조업

3510 양철관 및 기타철판제품제조업

양철, 합성, 「에나멜」 철판으로 관류 및 기타 철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타발, 「프레스」 가공에 의한 식기와 의료용기구등은 범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금속제품제조업(355)에 분류한다.

○ 통조림용관제조 ; 석유관제조 ; 양철관제조 ; 양철제용기제조 ; 바게쓰제조 ; 도라무관제조

352 인물 수공구 및 일반철물제조업

식탁용, 이발용 및 부엌용인물류, 농공업용기구, 수공구, 기타의 철물등과 같은 인물, 수공구 및 일반철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볼트, 낫트, 철병류제조업은 3570에 분류한다.

3521 인물 및 식탁용품제조업

가위, 이발용구, 면도날, 칼등과 같은 인물 및 식탁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
→
귀금속 및 금은제인물제조업은 3930에 기계인물류제조업은 3522에 각각 분류한다.

○ 식탁용인물제조 ; 가위제조 ; 이발용인물제조 ; 부엌용인물제조 ; 나이프류제

→
× 귀금속제식탁용인물제조(3930) ; 기계인물제조(3522)

3522 수공구제조업(농기구제외)

금속가공기계(금속공작기계제외), 목공기계, 제지기계, 제본기계, 피혁처리기계등에 부착되는 기계용인물을 제조하는 사업 ; 인물 및 농기구를 제외한 각종 이기공장구 즉 도끼, 대패, 끌, 장도리 줄, 톱등의 수공구와 귀금속의 수리업자용, 석공업자 및 철공업자용수공구, 햄마, 뱀취, 드라이바, 후라이어등과 같은 수공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기계용인물제조 ; 제지, 섬유공업용인물제조 ; 도끼제조 ; 토공용구제조 ; 끌제조 ; 석공용수공구제조 ; 보석가공수공구제조 ; 드라이바제조

× 인물제조(3521) ; 농기구제조(3523) ; 동력부수공구제조(3640) ; 절삭공구제조

3523

농기구제조업

삽, 평이, 호미, 낫 보습등과 같은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업용기계는 3620에 분류된다.

○ 경작용기구제조 ; 양잠기제조(금속제) ; 양계기제조(금속제) ; 양봉기제조(금속제)

× 농업용기계제조(3620) ; 토공용구제조(3522)

3529

기타철물류제조업

보통 철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타의 분류되지 않은 각종 금속제품 즉 자물쇠, 열쇠, 금속손잡이 및 자동차용 철물등과 같은 상게이외의 철물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볼트 및 낫트제조업은 3570에, 철정은 3561에, 인물류는 3521에 각각 분류한다.

○ 건축용철물제조 ; 가구용철물제조 ; 건구용철물제조 ; 차량용철물제조 ; 가방용철물제조 ; 자물쇠제조

353

위생장치 및 가열조명장치제조업(전기식제외)

3530

위생장치 및 가열조명장치제조업(전기식제외)

법랑철기제 및 금속제의 욕조, 편기, 수도전등과 같은 위생장치품, 석유곤로, 스토오부, 스페이스히터등과 같은 가열장치품, 석유등, 깨스등 및 카바이트등과 같은 조명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전기식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37)에, 도자기제는 유리 및 토석장품제조업(33)에 각각 분류한다.

○ 난방용기구제조 ; 조리용가열장치제조(전기식제외) ; 스토오브제조 ; 깨스곤로제조 ; 석유곤로제조 ; 법랑철기제위생장치제조 ; 반사경제조 깨스등제조 ; 카아바이트등제조

× 전기스토오브제조(3730) ; 전기곤로제조(3730)

354

구축용금속제품제조업

3540

구축용금속제품제조업

구축용 철강량, 철주, 수문, 철탑, 철사다리, 계단 및 창문용 금속제품, 저장탱크, 보이라, 창화(틀), 비상구의 계단등의 건축용, 장식용 금속제품, 온수관, 연통의 제조 및 수리등 구축용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사업체를 위하여 용단, 용접, 절곡등을 포함한 금속판의 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나 공업용보이라는 원동기제조업(3610)에 분류한다.

○ 건설용금속제품제조 ; 사다리제조(금속제) ; 창살제조(금속제) ; 수문제조(금속제) ; 문(문)제조 ; 창틀(화)제조 ; 철강판가공업 ; 저장탱크제조

355	법랑철기 및 프레쓰가공금속제품제조업
	법랑철기 및 타발 또는 푸레쓰가공에 의하여 병마개, 부엌용, 가정용, 의료용철제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발, 프레쓰가공에 의한 기계부분품제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나 법랑 철기제위생장치용품(편기, 욕조)은 위생장치 및 가열조명장치제조업(3530)에 분류한다.
3551	프레쓰가공제품 및 부엌탁상용알미늄제품제조업
	주발, 대접, 냄비와 같은 부엌 및 탁상용프레쓰가공제품과 알미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식기제조 ; 병마개제조
3552	법랑철기 및 프레쓰가공금속제품제조업(알미늄제품제외)
	기계부분품 및 의료용기구와 같은 법랑철기 및 프레쓰가공금속제품을 (알미늄제외)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의료용기구제조 ; 금속프레쓰업 ; 기계부분품제조(프레쓰가공)
	✗ 위생장치품제조(3530) ; 금속제가방제조(2922) ; 자동차차체(3832)
356	선재제품제조업
	철선재를 구입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561	철정제조업
	철정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주로 구입한 선재, 봉강을 사용하여 철선을 제조하며 일관작업으로 철정, 병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철강신선업(3414)에 분류하며 그리고 나사, 낫트, 볼트류제조업은 3570에 분류한다.
	○ 철정제조(구입한 선재에 의한것) ; 동정제조(구입한 선재에 의한것) ; 스파이크제조(구입선재에 의한것)
	✗ 철정제조(신선에서 일관작업에 의한것)(3414)
3569	기타선재제품제조업
	철강제와이야로오푸, 유자철선, 와이야스프링등과 같은 상계이외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같은 제품의 금속의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 강삭제조 ; 용접봉제조 ; 유자철선제조 ; 「와이야체인」제조 ; 와이야·스프링제조
	✗ 나선정제조(3570)
357	「낫트」, 「볼트」, 「와셔」, 「리벳트」(병) 나사류제조업
3570	「낫트」, 「볼트」, 「와셔」, 「리벳트」(병) 나사류제조업
	○ 볼트 ; 낫트 ; 나선정제조 ; 와셔 ; 리벳트

358	도금업
3580	도금업 주로 청부에 의하여 금속 및 금속제품의 도금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359	기타금속제품제조업
3590	기타금속제품제조업 금고, 금속활자, 금속용기제조업, 연마업등과 같은 상계이외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인쇄목적이외의 금속조각품제조, 대포, 소화기 및 동부속품제조업도 포함된다. ○ 금고 ; 금속활자 ; 인쇄목적 이외의 금속조각품제조 ; 금속부제조 ; 대포등의 무기 × 금속제케비넷, 로카, 책상, 탁자(26)
36	기계제조업(전기기계제외)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계측, 조정, 의료, 이화학용기계, 광학기계, 시계, 무기등을 제외한 기계 및 원동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력과 결부된 수공구, 가반공작기계류는 여기에 분류되나 수공구는 수공구제조업(3522)에 분류한다.
361	원동기제조업
3610	원동기제조업 증기기관, 타이빈, 수차, 디젤엔진, 반디젤엔진, 공업용보이라 및 기타의 원동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기 각종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생산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관차, 선박, 자동차, 항공기의 전용원동기 제조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38)에 분류한다. ○ 공업용보이라제조 ; 원동기용보이라제조 ; 증기기관제조 ; 수력타이빈제조 ; 개소린기관제조 ; 석유기관제조 ; 디이젤기관제조 ; 깨스기관제조 ; 압력기관제조 ; 압축공기기관제조 × 온수관제조(3540) ; 기관차제조(3820) ; 자동차용내연기관제조(3833) ; 항공기용내연기관제조(3890) ; 선박용기관제조(3811)
362	농업용기계제조업(농기구제외)
3620	농업용기계제조업(농기구제외) 농경, 파종, 수획, 털곡, 기타의 영농기계로써 분무기, 부란기, 양식기등과 같은 농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농기구는 농기구제조업(3523)에 분류한다. 정미기와 제분기는 기타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9366)에, 펌프기계제작은 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367)에 각각 분류한다. ○ 농경용기계제조 ; 파종기제조 ; 털곡기제조 ; 부란기제조

- × 농기구제조(3523) ; 펌프기계제조(367)
- 363 건설 및 광산용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 3630 건설 및 광산용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준설, 발굴, 도로 및 공항건설, 광석의 파쇄, 부유선광, 사분, 굴착등과 같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와 동설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콤파이어와 그 장치품제조업은 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3670)에 분류한다.
- 364 금속공작기계제조업
- 3640 금속공작기계제조업
그라인더, 후라이스반, 보오루반등 금속을 절삭하는 공장기계와 프레쓰, 단조, 굴곡등을 하는 가공기계와 금속가공기계의 부속품 및 부분품의 제조업, 드릴, 칼터 및 정밀계량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금속공장기계제조 ; 공장기계제조 ; 선반제조 ; 「보오루」반제조 ; 연삭반제조 ; 치절반제조 ; 압연기계제조 ; 신선기제조 ; 제관기제조 ; 기계푸레쓰제조 ; 전단기제조 ; 깨스용접기제조 ; 금속공작기계부분품제조 ; 단조형제조 ; 「푸레쓰」형제조 ; 절삭공구제조 ; 동력부공구제조
- × 수공구제조(3522)
- 365 섬유기계제조업
- 3650 섬유기계제조업
제사기, 방적기, 제승기, 염색기, 표백기, 정리기, 건조기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채봉기제조업은 공업용, 가정용을 가리지 않고 사무용, 씨어비스용 및 가정용기계 기구제조업(3680)에 분류된다.
- 366 기타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 식료품과 음료품의 제조 또는 가공기계 ; 팔푸 및 지류제조용기계 ; 활자주조기, 인쇄제본용기계 및 장치, 제련용장치, 유리, 씨멘트, 모자, 연초제조기등과 상계 이외의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3661 식료품제조용기계제조업
정미기계 및 제분기계류와 같은 식료품제조기계제조업을 말한다.
- 정곡기계및장치제조 ; 제분기계제조 ; 제면기계제조 ; 통조림기계제조 ; 수산가공기계제조 ; 과자제조기계및장치제조 ; 식료품가공기계부분품및부속품제조
- 3669 기타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팔프」 및 지류제조용기계, 인쇄제본용기계, 제련 및 정련용장치, 연초제조기등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을 말한다.

○ 제재기계제조 ; 목공선반제조 ; 베니야기계제조 ; 팔프제조기계및장치제조 ; 인쇄기계및장치제조 ; 인쇄용로오라제조 ; 조면기제조 ; 모자제조기제조

367 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

3670 일반산업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

펌프, 공기압축기, 에레베타, 콤베어 및 그의 설비품제조업, 산업용 트랙타, 트래이лер 및 그 부속품제조업, 동력전도장치(쇄전도기, 기아그릿취, 샤프트 및 베어링)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자동차용동력전도장치제조업은 여기서 제외하고 공업용요 및 노제조업등은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나 전기용선풍기제조업은 산업용이건 가정용이건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3730)에 분류한다.

○ 펌프, 펌프장치제조 ; 수동펌프제조 ; 동력펌프제조 ; 가정용펌프제조 ; 압축기제조 ; 송풍기제조 ; 배풍기제조 ; 에레베터제조 ; 에스카레타제조 콘베어제조 ; 권상기제조 ; 트렉타제조 ; 치차제조 ; 요로제조 ; 화학기계제조 ; 탄차및광차제조

368 사무용, 써어비스용, 가정용기계기구제조업

3680 사무용, 써어비스용, 가정용기계기구제조업

제봉기, 계산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오락기구, 냉동기구, 온냉조절장치품등과 같은 사무용, 써어비스용,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사무실 및 가정용의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기 및 전기선풍기제조업은 「비산업비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3730)에 분류하고, 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제조업은 2610에 분류한다.

○ 통계기제조 ; 계산기제조 ; 가산기제조 ; 미성제조 ; 공업용미성제조 ; 미성조립업 ; 미성부분별제조 ; 등사기제조

× 냉장고제조(빙을 사용하는것)(2610)

369 기타기계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3690 기타기계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소화기, 보통기계의 수리, 각종부분별의 제조업등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기계기구제조업과 타인소유의 원재료를 받아 상계이외의 기계 및 부분품의 제조가공 및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화기제조 ; 송수식동력소화장치제조 ; 볼·베아링, 로오라베아링제조 ; 기계및부분별제조수리업(주된 제품이 정해져 있지 않는것)

× 베아링제조(볼베아링, 로오라베아링제외)(3670)

3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발전용, 축전용, 송배전용, 전기변압용 기계기구의 제조업, 산업용, 가정용, 전기기구제품제조업, 철연전선과 「케이블」제조업, 자동차전기기구, 철도기관차용 및 객차용전기기구, 전지제조업, X광선 및 전기치료기구제조업, 전구제조업, 레드오를 포함한 통신용기계기구와 그의 부속품제조업, 전기축음기계제조업등과 같은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71 전기기계 및 공업용전기기구제조업(통신용전기기기제외)

3710 전기기계 및 공업용전기기구제조업(통신용전기기기제외)

변압, 배전용 변압기나 「오일스위치」 및 동관련품등 발전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필요한 각종 전기기계와 장치품제조업을 말한다. 전기용도자토기제조업은 3332에 분류한다.

○ 발전기제조 ; 회전변류기제조 ; 변압기제조 ; 전압조정기제조 ; 배전반제조 ; 개폐기제조(전력용) ; 소형개폐기제조 ; 점멸기제조 ; 접속기제조 ; 휴우스제조 ; 철연재료제조 ; 배선부속품제조

× 철연전선, 케이블등제조(3740) 도자기제배선부속품제조(3332)

372 전동기 및 기타산업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3720 전동기 및 기타산업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동기, 전기용접기, 산업용전열장치 및 기타산업용전기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기용접기제조 ; 저항용접기제조 ; 전극보지구제조 ; 전동기제조 ; 전열장치제조 ; 정류기제조

× 용접봉제조(3569)

373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

3730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

가정용 및 상업용 전열기, 통선풍기, 수송용전기장치품인 전동기 「제네레이타」 전기제어장치 및 「푸라그」, 내연기관용점화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기아이통제조 ; 전기스토브제조 ; 전기콘로제조 ; 전기선풍기제조 ; 전기세탁기제조 ; 전기냉장고제조 ; 차량용모터제조 ; 차량용발전기제조 ; 차량용전기식제어장치 ; 내연기관용점화장치제조

374 철연전선 및 케이블제조업

3740 철연전선 및 케이블제조업

구입한 동이나 「알미늄」의 나선을 사용하여 철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나전선(동, 알미늄등) 제조업은 「제1차금속제품제조업」(34)에 분류한다,

○ 철연전선제조 ; 권선제조 ; 케이블제조(동및알미늄)

× 나전선제조(34)

375	전구제조업
3750	전구제조업 형태는 가리지 않고 모든 전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구용유리제조업은 「기타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3322)에 분류한다. ○ 영사기용램프제조 ; 네온램프제조 ; 형광등제조 ; 백열전구제조 ; 자동차용전구제조 ; 적외선램프제조 ✖ 전구용유리제조(3322)
376	통신기계기구 및 유사품제조업
3760	통신기계기구 및 유사품제조업 전화기, 교환기, 전신기, 방송장치, 기타유선통신기계기구 및 각종 무선응용기기 를 제조하는 사업, 「래티오」 및 「테레비죤」 방송기구 래티오수신기 및 테레비 죤수상기를 제조하는 사업, 녹음장치, 재생장치, 확성장치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통신기용의 저항기, 축전기, 변전기, 기타 통신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교통보안용에 공하는 전기신호보안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기타 전기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77	전지제조업
3771	축전지제조업 종류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축전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772	건전지제조업 건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79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3790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풀라그」, 「소켓트」, 전등장식물, 천정셋트 및 동유사품등과 같은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의료용X선장치 ; X선탑상기제조 ; 초단파치료용장치제조 ; 전기계측기제조(전류계, 전압계 등)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수륙공수용 기계기구의 제조업과 그의 수선업을 말한다. 그러나 수송기기용 전기장치제조업은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제조업」(373)에 분류한다.
381	선박건조 및 수리업 선박건조 및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전용 원동기제조업, 선박해체업등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나 청부에 의한 도장업, 선실작업 및 기타 선박장치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각기 해당산업에 분류한다.

3811 선박용기관제조 및 수리업

선박용 기관제조와 수리업을 말한다.

3812 강철제선박건조 및 수리업

강철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강철제선박건조및수리업 ; 조선업

✗ 도장업 ; 선내배선업

3813 목조선박건조 및 수리업

목조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목조선박건조및수리업 ; 조선업 ; 어선건조 ; 보오드건조

✗ 선체도장청부업

382 철도차량제조업

3820 철도차량제조업

모든 궤도에 사용할 기관차제조 또는 수리하는 사업과 궤도용 객차 및 화물차의 제조 및 수리하는 사업등을 말한다. 전차제조업도 여기에 분류된다. 여기에는 철도청의 공작창과 전력회사의 전차수리공장도 포함한다.

○ 기관차제조 ; 전기기관차제조 ; 내연기관차제조 ; 기관차부분품제조 ; 객차제조 ; 화차제조 ; 전차제조 ; 객화차부분품제조

383 자동차제조업

각종승용자동차, 상업용차, 빼스, 트럭, 트레이лер, 병원차등 완성차의 제조와 그의 조립업 및 「부레이크」, 「구라취」, 「악쎄레스」, 「기아」, 「트란스밋 쏨」, 차륜 및 차체와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의 제조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타이어」와 「튜브」 제조업은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301)에 분류하고 자동차용 전기장치품제조업은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 품제조업」(373)에 분류한다.

3831 완성차 및 자동차「샤시」제조업

완성차 및 자동차 「샤시」의 제조업을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은 「자동차수리업」(384)에 분류한다.

○ 자동차제조 ; 빼스완성차제조 ; 자동차「샤시」제조

✗ 자동차차체제조(3832) ; 자동차부분품제조(3833)

3832	각종자동차의 차체 및 「트레이러」 제조업 승용차, 「트럭」, 빼스, 기타 자동차류의 차체 제조와 「트레이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차체를 「샤시」와 결부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3833	자동차부분품 및 부속품제조업 각종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용 「타이어」와 「튜브」는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301)에, 자동차용유리제품제조업은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332)에, 자동차용전기장치품제조업은 「비산업용전기기구 및 수송용전기장치품제조업」(373)에, 자동차부속품수리업은 3840에, 각각 분류한다. ○ 자동차엔진 및 엔진부분품제조 ; 부렉기부분품제조(자동차용) ; 차축제조 ; 차륜제조 ; 자동차방향지시기제조 ; 크래지제조 × 자동차제조조립업(3831) ; 자동차타이어, 튜브제조(3010) ; 자동차용유리제조(3322) 축전지제조(3771)
384	자동차수리업
3840	자동차수리업 자동차의 수리업과 각종 자동차의 차개수리업과 같은 전문수리업을 말한다. ○ 자동차수리업 ; 오토바이수리업 ; 자동차 「타이어」 「튜브」 수리업
385	자전차, 「모터싸이클」 및 동부속품제조업
3851	자전차, 「모터싸이클」 및 동부속품제조업 부분품을 구입하여 완성차로 조립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된다. 「타이어」와 「튜브」 제조업은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301)에 아동용 삼륜차는 「완구 및 운동용구제조업」(3993)에 각각 분류한다. ○ 자전차제조조립업 ; 자전차부분품제조 ; 자전차후레임제조 ; 공기입펌프제조 × 아동용승물제조(3993)
3852	자전차수리업 자전차나 「모터싸이클」의 수리업을 말한다. ○ 자전차수리 ; 자전차타이어 ; 튜브수리업
389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890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우마차, 리야카 및 각견인차류등과 같은 상계이외의 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차제조 ; 하차제조 ; 우마차제조 ; 인력차제조 ; 우마차부분품제조

- 39 기타제조업
다른 어느 종분류에도 속하지 아니한 제조업은 여기에 분류한다.
- 3911 의료, 과학 및 계측조정용기계기구제조업
계측용, 조정용, 연구용, 과학용, 기계기구제조업, 의료용기계기구 및 설비제조업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전기의료설비제조업은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3790)에 분류한다.
- 3911 과학 및 계측조정용기계기구제조업(의료용제외)
연구실용, 과학용, 기상학용, 공학용, 재료시험용(경도, 확장력등)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광학기계에 속하는 것은 「사진기 및 광학기계기구제조업」(392)에 분류한 정밀측정기 및 압력측정기등의 제조업은 「금속공작기계제조업」(364)에 분류한
○ 도량형기제조 ; 체온계제조 ; 한난계제조 ; 수은온도계제조 ; 압력계제조 ; 옐
량계제조 ; 밀도계제조 ; 재료시험기제조 ; 측각측량기제조 ; 사진측량기제조 ;
· 연구용화학기계기구제조 ; 교육용이화학기계기구제조
× 광학기계기구제조(392) ; 전기계측기제조(3790) ; 의료용X선장치(3790)
- 3912 의료용기계기구제조업
외과용, 수의용, 정형외과용, 치과용, 내과용등 의료용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업 또는 의족, 의수, 의안등의 인체보안장치제조업을 말한다. X광선 및 전기의
료설비는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379)에 분류한다.
○ 외과의료기계기구제조 ; 내과치료기계기구제조 ; 정형외과의료기계기구제조 ;
치과의료기계기구제조 ; 수의용기계기구제조 ; 청진기제조 ; 흡입기제조 ; 주사기
제조 ; 소독용기계기구제조 ; 의수의족제조 ; 의안제조 ; 의치재료제조
× 체온계제조(3911) ; 가아제, 봉대제조(2399) ; 탈지면제조(2399) ; 섬유제위생
재료제조92399
- 392 사진기 및 광학기계기구제조업
광학기계기구와 렌스, 안경, 사진기, 사진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감광지와 사진용약품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3199)에 분류한다.
- 3921 광학기계기구 및 렌스제조업
광학렌스, 푸리즘의 연마업, 현미경, 망원경, 필드그拉斯, 오페라그拉斯, 굴절계,
분광계, 비색계 및 기타광학측정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기, 확대기, 복사기, 삼각, 전판상, 셀프다이어, 현상용 맹크, 촬영기, 영사기, 환등기, 현상기등을 제조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분류한다. 감광지제조업 및 사진용약품제조업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3199)에 안경제조업은 「안경제조업」(3922)에 각각 분류한다.

○ 현미경제조 ; 망원경제조 ; 쌍안경제조 ; 확대경제조 ; 오페라그라스제조 ; 광학렌즈제조 ; 프리즘제조 ; 광도계제조 ; 광학측정기제조

× 안경제조(3922) 안경렌스제조(3922) ; 감광지제조(3199)

3922 안경제조업(테줄 포함)

안경렌스의 연마업, 안경테 및 완성된 안경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안경렌스제조 ; 안경테제조 ; 안경제조

393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

3930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

귀금속, 보석, 진주를 사용한 귀금속 및 보석제품제조업과 금은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금제품의 제조업도 포함하며 보석의 절단 및 연마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화장상자제조(귀금속제) ; 콤팩트제조(귀금속제) ; 보석상자제조(귀금속제) ; 장신품제조(귀금속제) ; 상아품제조(귀금속제) ; 상배제조(귀금속제) ; 보석절단 ; 연마업

× 장신품제조(귀금속제이외의것) ; 인조보석제조(유리제아닌것)(3399) ; 인조보석제조(유리제)(3323)

394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940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 비니루, 스플론치등을 구입하여 비니루 스플론치 플라스틱제작식품, 진품, 씨이트, 카바, 단추, 기계부분품 및 건구등과 같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푸라스틱제작식품 및 일용품 ; 진품 ; 카바, 단추, 씨이트, 건구, 비니루화제조

395 칠기제조업

3950 칠기제조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칠기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전칠기제조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 나전칠기제조 ; 칠기제조

396 펜, 연필, 기타사무용품 및 화가용품제조업(지류제외)

3960 펜, 연필, 기타사무용품 및 화가용품제조업(지류제외)

만년필, 연필, 스텐실, 철필축, 크레이온, 동유사품, 스탬프, 고무, 및 목제도장, 수필, 화필, 유화테블 및 화판, 조색판, 축도기, 화가용카라와 납, 필기용잉크, 카본지, 리봉 및 기타의 사무용, 화가용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펜축, 펜축제조 ; 샤아프펜슬제조 ; 만년필제조 ; 볼펜제조 ; 철필제조 ; 만년필펜축제조 ; 연필제조 ; 연필심제조 ; 크레이온제조 ; 유회구제조 ; 모필제조 ; 스탬프제조 ; 고무및목도장 ; 삼각정규제조 ; 주판제조(2590)

399 상계이외의 제조업

3991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양산과 우산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포제우산, 양산 ; 비니루우산 ; 종이우산
× 우의제조(2436)

3992 돈모가공업

인공강모는 여기에 제외된다.

○ 돈모가공업

3993 완구 및 운동용구제조업

대인용, 아동용, 실내외락기구, 각종완구, (인형과 아동용차량 예, 삼륜차, 유모차를 포함) 「스포츠」 및 체육용품제조업을 말한다.

○ 오락용품제조 ; 완구제조 ; 위기용품제조 ; 교재완구제조 ; 인형제조 ; 유모차제조 ; 삼륜차(아동용)제조 ; 스케이트제조 ; 운동구제조(구포함)

× 운동복제조(2431) ; 운동화제조(3020)

3999 상계이외의 제조업

상계에서 분류할 수 없는 모든 제조업을 여기에 분류한다. 예를들면 플라스틱제를 제외한 비, 솔, 광고용품, 의상장식품, 신변세화(귀금속이나 보석류제외), 우모장식품, 조화업, 램프의 샷갓(립) 제조업(금속제, 유리제, 포제, 이외의 것), 흡연용 파이프류, 시계류의 완성품제조업 (시계수리제외) 머리망, 식발제품, 수선, 악기(축음판 취입은 써어비스업)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비, 솔제조(플라스틱제이외의것) ; 미용원및이발점의비품제조(파마넨트, 기계기구 ; 이용용의자등) ; 광고장치 ; 의상장식품제조(귀금속, 보석, 모조보석이외의것) ; 조화제조 ; 시계제조 ; 악기제조 ; 수선제조 ; 침 및 편제조 ; 흡연용파이프제조

× 플라스틱제 비, 솔 및 의상장식품(3940)